

우정사업의 사업간 거래의 합리적 가격산정 방안

박중권* · 김 현**

개 요

우정사업은 우편사업, 예금사업 및 보험사업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우정사업과 관련하여 회계처리 방법에 있어 우편사업과 예금사업은 “통신사업특별회계”로 처리되고, 보험사업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 처리되고 있다.

한편, 우정사업은 2000년 7월 우정사업본부 출범을 계기로 경영평가제도가 정착되어가고 있고, 회계제도와 관련하여 원가계산, ERP 도입 등 많은 발전을 하여 왔다. 다만 우정사업에 있어 사업 상호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일부 거래가격이 다소 합리적이 못한 면도 있다. 또한 WTO 우편서비스 협상이 곧 진행될 것이고, 나아가 우정사업에 있어 각 사업별 경영성과 측정을 통한 사업별 책임 경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사업 상호간의 거래가격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정사업에 있어 사업간 거래 즉, 내부거래를 사례중심으로 가격산정 방안을 도출하였다.

목 차

I. 연구 배경	2
II. 내부거래의 개요	4
1. 내부거래의 정의	4
2. 우정사업의 내부거래 정의 및 범위	8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연락처 : (02) 570-4241, e-mail : jkpark@kisdi.re.kr

** 성도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연락처 : (02) 517-8333, e-mail : hkim@sungto.co.kr

3. 우정사업의 내부거래 개념적 유형	12
Ⅲ. 우정사업의 내부거래 유형 및 유형별 사례	19
1. 우정사업의 내부거래 유형	19
2. 우정사업의 내부거래 유형별 사례	21
Ⅳ. 내부거래의 가격설정 대안 및 유형별 가격설정	33
1. 내부거래의 가격설정 대안	33
2. 내부거래의 유형별 가격설정	39
Ⅴ. 우정사업의 사업간 거래의 합리적 가격산정 방안	45
1. 정보통신부문 전입금	45
2. 무료우편	47
3. 우편차량에 의한 현금수송	48
4. 일반회계 전입금 및 보특회계전입금	54
5. 물품업무 중 우편연하장 등 판매	57
6. 본부와 체신청간의 대차거래	59
7. 무료입주 우체국	60
8. 시사점	61
참고문헌	61

I. 연구 배경

우정사업은 크게 우편사업과 금융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금융사업은 예금사업과 보험사업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우정사업과 관련하여 회계처리 방법에 있어 우편사업과 예금사업은 “통신사업특별회계”로 처리되고, 보험사업은 “우체국 보험특별회계”로 처리되고 있다.

한편, 우정사업은 2000년 7월 우정사업본부 출범을 계기로 경영평가제도가 서서히 정착되어가고 있고, 회계제도와 관련하여 서비스의 원가계산,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통합경영관리) 도입 등 많은 발전을 하여 왔다. 다만, 우정사업에 있어 사업 상호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일부 거래가격이 다소 합리적이지 못한 면도 있다. 따라서 우정사업의 건전성을 위하여 사업 상호간 거래에 따른 가격산정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또한 국제관계상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첫째, 우정사업 경영평가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 사업별 경영성과를 측정하여야 하며, 이의 전제 조건으로 각 사업 상호간의 거래가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관리회계에서 사업별 성과측정 및 평가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각 사업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다. 사업별 재무제표의 생성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회계연도 중 각 사업간의 구분계리(區分經理)가 이루어지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특히, 예산제도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면 예산편성 단계부터 구분계리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회계분리를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각 사업간의 성과측정을 위한 재무결산 결과의 분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회계분리와 함께 각 사업간에 이루어지는 내부거래의 파악과 가격설정은 사업별 성과측정을 위해서는 중요한 사항이다. 내부거래는 각 사업간의 재정적, 사업적 의존도 및 관계에 따라 그 종류가 상이하다. 실무에 있어 내부거래와 관련한 가격설정은 “내부가격(회계)”, “대체가격(회계)” 또는 “이전가격(세무)”이라는 용어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사업별 성과평가에 있어 회계분리를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결과(과정을 통한 분리 또는 산정된 결과의 분리라는 구분은 있겠지만)의 기본적인 구분 작업으로 본다면, 내부거래(內部去來)의 구분 및 가격설정은 각 사업간의 실적을 확정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둘째, WTO 서비스협상에 대비하기 위해 우정사업에 있어 각 사업 상호간의 거래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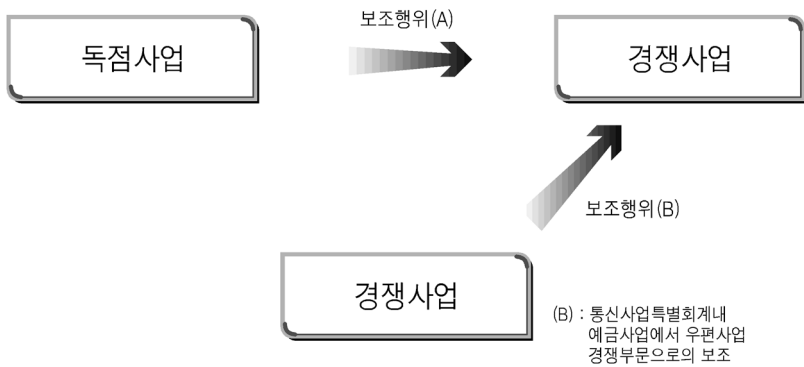
2001년 11월 WTO 도하 각료회의가 개최되는 등 향후 WTO 서비스협상 추진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사업, 예금사업 및 보험사업 상호간의 상호보조가 금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나아가 독점과 비독점 부문간의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독점분야에서 경쟁적인 분야로의 보조행위 금지요구가 공정경쟁이라는 취지 하에서 이슈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통신사업특별회계내의 예금사업에서 우편사업의 경쟁부분으로의 보조가 이루어 질 경우 이는 전혀 성격이 다른

사업부문으로부터의 보조이기는 하지만 공정경쟁 차원에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다.

현재 국내우편사업은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기여 한다”는 목표아래 「우편법」 제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정부기업의 형태로 독점운영 되고 있어 엄밀한 의미에서 우편시장 그 자체에 경쟁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택배업, 소화물수송업, 국제사송업 등 관련 업체와는 실질적인 경쟁관계로서 현실적으로 경쟁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WTO서비스 협상에서 주요 이슈가 될 내부거래의 유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WTO 서비스협상에서 주로 이슈가 될 내부거래



II. 내부거래의 개요

1. 내부거래의 정의

가. 공정거래법에서의 내부거래

공정거래법에서 내부거래(internal transaction)의 사전적(辭典的) 의미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 간의 거래행위를 의미한다. 즉, “규모 기업집단(특정 재벌그룹)에 속하는 각 계열회사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행위”를 내부거래로

정의하고 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는 재벌그룹 계열회사간의 특혜를 주는 거래 행위에 대해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적 원리인 경쟁(競爭)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내부거래”라고 규정하고 있어 내부거래에 대해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재벌그룹 계열회사 간의 거래를 위법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내부거래가 문제되는 것은 그것이 부당내부거래(不當內部去來)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부당내부거래의 유형으로는 제품가격·거래조건 등에서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비계열사에 대한 정상적인 판매가격보다 싼 가격에 공급하거나 특정 계열회사의 재화나 서비스를 비싸게 구매하는 행위, 임직원에게 자사 제품을 사거나 팔도록 강요하는 사내판매 강요행위, 납품업체에 자기 회사 제품을 사도록 떠맡기는 거래강제,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계열사와의 거래를 기피하는 거래거절 등이 제시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의한 내부거래 정의는 부당내부거래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어 내부거래의 경제적 성격을 이해하는데 있어 참고가 될 수 있다.¹⁾

나. 정부회계에서의 내부거래

정부(政府)에 있어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수지(統合財政收支)²⁾를 작성하는 과정

1) 부당내부거래와 정부의 제재

재벌그룹의 내부거래가 상식을 넘어선 과도한 지원을 통해 부실 계열회사를 도와주는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경쟁업체에는 간접적인 피해를 주게 되는 문제점과 함께 국제화 시대를 맞아 기업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아래 정부는 1993년부터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1997년 30대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심사지침을 마련하여 이들 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대규모 기업집단이 부당 내부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조치를 취하거나 검찰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행정조치에는 해당 기업에 거래행위 중지명령, 부당 내부거래 규모의 2%까지 과징금부과 및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문 공표와 같은 것들이 있다.

2) 정부의 통합재정수지는 예산, 기금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정부재정의 전체적인 수입과 지출 내역을 총합하는 것으로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의 정부통계작성지침(GFS: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에 따라 작성되고 있음.

에서 주로 사용하는 개념이다. 여기서는 내부거래를 “정부의 회계 및 기금간의 통합계정을 순계(純計)로 계산하기 위해 차감되어야 하는 회계(기금)간 거래”로 정의될 수 있다. 즉, 이러한 관점에서 내부거래의 개념은 보고단위를 중심으로 설정된 개념으로 단순히 정부의 구분회계 단위(일반회계, 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상호간의 거래를 내부거래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이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회계상 개념인 거래(去來)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통합계정수지에서만의 거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거래(transaction)라는 용어는 본래 기업회계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자산, 부채·자본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고 수익이나 비용을 발생케 하는 모든 사항 또는 사상”으로 정의되고 있다.

정부회계에 있어 내부거래 정의는 주로 재정적인 통계치 작성에 있어 상계가 필요한 부분을 설정하기 위한 개념이므로, 예산과목을 중심으로 한 내부거래 과목 분석, 구분회계 단위간의 거래분류에 있어서는 참고가 될 수 있다.

다. 기업회계에서의 내부거래

기업회계에 있어 내부거래는 “기업집단에 대한 결합재무제표(結合財務諸表) 또는 연결대상 회사에 대한 연결재무제표(連結財務諸表) 작성에 있어 결합 또는 연결대상 회사간의 거래로 상계제거가 필요한 거래”를 말하며, 내부거래의 종류로 채권·채무거래, 수익·비용거래, 투자와 자본거래 등이 일반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또한 기업회계에 의한 내부거래는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한 보고단위를 설정함에 있어 사용된다는 점에서 정부에 있어서의 내부거래와 유사한 면이 있으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실체간의 거래라는 점에서 법인격을 가지지 못하는 특정 정부내의 회계간의 거래를 의미하는 정부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 기업회계에 있어서의 내부거래 정의는 내부거래의 성격별 분류를 통한 거래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다.

라. WTO 서비스협상에서의 내부거래

서비스교역의 장벽을 제거하여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를 가속화 하기위한 다자간 규범으로 제정된 WTO의 서비스협정인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는 자유화 대상이 되는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보조를 금지하고 있다. 협정에 의한 보조행위 금지규정에 대비하여 우정사업본부의 거래행위 중 구분회계 단위, 사업단위 간의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조사를 통해 그것이 WTO 서비스협정에 의한 규제대항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분석, 판단한 후 문제가 되는 거래행위에 대한 재정적지원의 정도, 가격산정의 합리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내부거래의 개념은 “WTO의 서비스협정에 따라 금지대상이 되는 보조 행위적 거래”라고 좁게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다루고 있는 WTO의 보조금협정(WTO 보조금협정 해설: 산업자원부 1998. 12)에서는 보조금 중 대표적인 것인 정부나 공공기관의 재정적 기여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정부의 직접적 (예: 무상지원, 대출, 지분참여) 또는 간접적인 자금이전
- 정부의 채무부담 (예: 대출보증)
- 납부되어야 할 정부세입의 포기 (예: 세액공제와 같은 재정유인책)
- 일반적인 사회간접시설 이외에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 또는 정부의 재화구매
- 정부가 자금공여기관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거나, 통상 정부가 수행할 상기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민간기관에 권한을 위임하거나, 감독하면서 해당 기관의 활동이 정부의 그것과 상이하지 않은 경우

각 사유별 내부거래의 정의를 요약·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각 사유별 내부거래의 정의

구분	정의	시사점
공정거래법	대규모 기업집단 각 계열회사간의 거래행위 (문제가 되는 것은 부당내부거래임)	-경제적 성격 이해 -거래의 유형
정부회계	순계에 의한 통합재정수지를 계산하기 위해 차감되어야 하는 거래	-예산과목과의 관계 -회계간 거래분류
기업회계	연결재무제표 등 작성에 있어 상계제거 되어야 하는 연결/결합대상 회사간의 거래	-성격별 거래분류 -거래의 특성이해
WTO 서비스협상	자유화대상 서비스에 대한 보조행위 등의 금지와 관련 상정할 수 있는 사업, 회계, 기관간의 거래행위	-연구의 기본대상 -가격산정 기준

2. 우정사업의 내부거래 정의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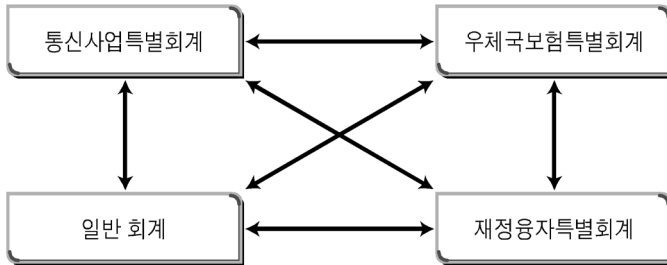
가. 내부거래의 정의

우정사업에 있어 사업간 상호 거래 등을 내부거래라고 하며, 내부거래의 정의는 우정사업과 관련된 회계구조, 조직구조 및 사업종류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내부거래란 우정사업본부와 관련된 회계간의 거래 행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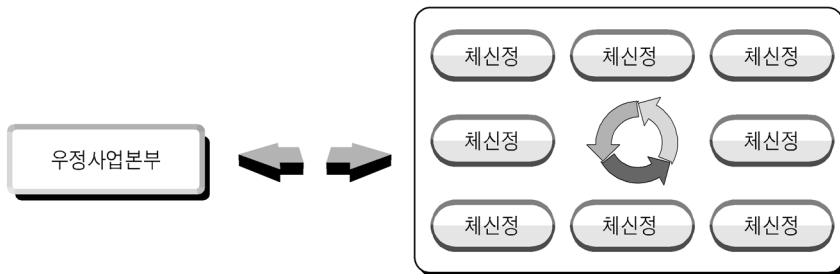
우정사업본부의 회계는 크게 통신사업특별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일반회계 및 재정융자특별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회계간의 거래라는 관점에서 내부 거래를 본다면 각 회계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가없는 자금수수, 서비스제공에 따른 비용지급과 수취 등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내부거래로 정의할 수 있다. 회계간의 거래를 내부거래로 보는 경우 이것을 현재 예산회계 또는 기업회계의 관점에서 하나의 보고단위(reporting entity)로 보아 세입세출결산서나 재무제표가 이러한 관점에서 작성되고 있어 기존에 작성된 결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내부거래의 세부유형을 찾아내는데 유리하다는 특징이 있다. 회계간 내부거래를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회계간의 내부거래



둘째, 조직의 관점에서 내부거래란 우정사업본부의 조직단위간의 거래행위이다. 우정사업본부의 조직은 본부아래에 지역별 체신청, 우체국 등 수직적인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나, 우정사업본부의 경우 이러한 조직단위가 회계보고의 단위는 아니다. 즉, 이러한 조직별로 재무제표가 생산되지는 않는다. 행정관리 범위의 한계, 관리회계적 의미 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조직 중 현재 각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8개의 체신청을 조직구분의 단위로 보는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에서 최근에 정착되어가고 있는 우체국의 하나인 집중국을 조직구분의 단위로 보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집중국은 우정사업본부의 여러 사업 중 하나인 우편사업의 물류에 대한 부분의 효율적 처리에 중점을 두고 구성된 조직단위이므로 회계적 관점인 내부거래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단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 된다. 조직간 내부거래를 정리하면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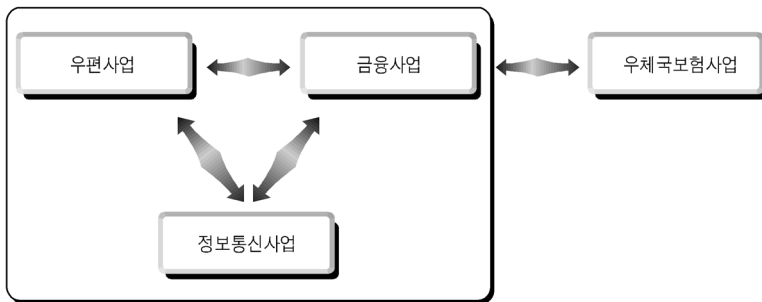
[그림 3] 조직간의 내부거래



셋째, 사업의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우정사업본부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우편사업, 금융사업, 정보통신사업, 수탁사업, 우체국보험사업의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수탁사업은 우편사업과 금융사업의 기능 일부를 위탁받아 행하는 사업이므로 우편사업과 금융사업의 공통 업무적 성격을 갖고 있어 성격별로 사업을 구분한다는 점에서 볼 때 별도의 사업단위로 보기에 어려운 한계가 있다. 따라서 내부거래와 관련한 사업의 분류로는 적절하지 못하므로 사업의 구분을 수탁사업을 제외한 4가지로 볼 수 있다. 결국 내부거래란 우정사업본부의 4가지 사업간의 거래행위를 의미한다. 현재 우정사업본부의 4가지 사업 중 우편사업, 금융사업, 정보통신사업은 통신사업특별회계라는 하나의 회계에 소속되어 있으며, 이 중 우편사업은 통상우편과 소포서비스를, 금융사업은 예금의 수신 및 관리를, 정보통신사업은 전파관리 등과 관련된 사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우체국보험사업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라는 별도의 회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는 보험의 판매를 근간으로 하는 사업 부문이다. 사업간 내부거래를 정리하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사업간의 내부거래



나. 내부거래의 설정범위

우정사업본부 내(內)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거래를 회계, 조직 및 사업이라는 단위별 기준에 의하여 분류하였다. 즉, 회계는 우정사업본부와 관련된 4가지의 회계를, 조직은 우정사업본부내 산하의 본부 및 8개 체신청을 그리고 사업은 우편,

금융, 정보통신 및 우체국보험의 4가지 사업을 내부거래의 분석을 위한 기준단위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3가지 관점에서의 분류는 서로 상충되는 부분도 있으나 상당부분은 서로 중복되어 있다. 예를 들어 통신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보험특별회계간의 거래는 사업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편, 금융 또는 정보통신사업과 우체국보험사업간의 거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내부거래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군사우편과 같이 우정사업본부 입장에서는 내부거래로 보기 어려우나³⁾ 정부전체의 입장에서는 내부거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정사업본부와 타정부기관과의 거래를 내부거래로 보는 것은 WTO의 보조금협정에 따른 거래유형 분석이란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며, 정부내의 재정 지원적 거래를 파악한다는 면에서 보면 이러한 타정부기관과의 거래를 함께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내부거래의 범위를 우정사업본부의 회계, 사업, 조직 및 타정부기관과의 거래로 정하였으며, 그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내부거래의 범위

구분기준	대상범위	내용
회계	통신사업특별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일반회계, 재정융자특별회계(4개 회계)	-각 회계간의 거래
조직	본부 및 산하 8개 체신청	-본부와 체신청간의 거래 -체신청과 우체국과의 거래
사업	우편, 금융, 정보통신, 우체국보험 (4개 사업단위)	-각 사업간의 거래
타정부	우정사업본부와 타정부기관	-우정사업본부와 타정부기관의 거래

3) 내부거래와 대비하여 외부거래(external transaction)이라 부르기도 한다.

3. 우정사업의 내부거래 개념적 유형

가. 단위별 기준에 의한 내부거래 유형

단위별 기준에 의한 내부거래 유형분석은 거래의 주체를 기준으로 한 분류방식이며, 이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내부거래로 볼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제공하기 위해 설정된 방식이다.

1) 회계간 거래

회계간 거래는 예산회계법, 기업예산회계법 등에 의한 정부의 구분회계 단위인 회계를 단위로 하여 회계간의 거래를 내부거래로 보는 방식이다.

예) 통신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보험특별회계간의 거래

2) 사업간 거래

사업간 거래는 법령에 의한 회계구분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부단위가 수행하고 있는 각각의 사업을 단위로 하여 사업간의 거래를 내부거래로 보는 방식이다. 즉, 회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예산 및 재무회계 중심의 접근방식이라면, 사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관리회계적인 측면(예: 사업별 업적과 성과평가)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예) 우편사업과 금융사업간의 거래

3) 조직간 거래

정부의 예산,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는 기본적으로 회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인 거래흐름을 파악함에 있어 정부조직의 구성체계를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본지점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되는 우정사업본부내 본부와 체신청간의 거래를 내부거래로 보는 것은 수평적인 시각인 회계, 사업과는 달리 수직적인 내부거래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기준에 의한 내부거래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경우 관리회계적인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거래 유형 및 실지 사례를 파악하는데 있어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정사업본부의 각 우체국간의 거래를 모두 내부거래로 본다면 그 건수는 모든 조직 내의 거래를 체크하는 것이어

서 조사 및 분석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 충청체신청과 부산체신청간의 거래

4) 부서내 거래와 타정부기관과의 거래

이는 특정부처와 타정부기관과의 거래를 내부거래로 보는 방식이며, 이는 위에서 살펴본 조직을 기준으로 한 구분을 단순히 타정부기관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한 방식이다. 예를 들어 우정사업본부를 기준으로 한다면 우정사업본부와 모든 정부기관(예: 국방부, 법무부, 교육인적자원부 등)과의 거래를 모두 내부거래로 보는 방식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방식은 내부거래의 유형파악이 국제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예: WTO)에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예) 국방부와 우정사업본부(통신사업특별회계)간의 군사우편

나. 성격별 기준에 의한 내부거래 유형

성격별 기준에 의한 내부거래 유형분석은 거래가 기업회계적으로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가를 기준으로 한 분류방식으로, 거래의 결과가 어떠한 회계적 영향을 미칠 것 인가에 대한 분석을 위해 참고가 되는 방식이다.

1) 채권과 채무거래

채권과 채무거래는 거래의 상대방에 있어 일방의 입장에서는 채권이 발생하고 다른 쪽 입장에서는 채무가 발생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기업회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거래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exchange)이므로 동일한 회계기준을 적용한다고 보면 양 당사자사이에서 채권과 채무라는 상반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사유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내부거래는 채권과 채무거래일 것으로 추측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채권의 회수와 이를 통한 채무감소를 통해 해소되게 될 것이다.

예) 국방부와 우정사업본부(통신사업특별회계)간의 군사우편에 있어서의 회계처리

- 국방부⁴⁾

4) 국방부에서 현재 기업회계 방식의 회계처리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국방관리 회계에 의해 기업회계와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음),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것임

채무계상시: (차변) 우편통신료 xxx (대변) 미지급비용 xxx
채무결제시: (차변) 미지급비용 xxx (대변) 현금과 예금 xxx

• 우정사업본부(서울체신청)

채권계상시: (차변) 미수금 xxx (대변) 수익 xxx
채권회수시: (차변) 현금과 예금 xxx (대변) 미수금 xxx

2) 수익과 비용거래

수익과 비용거래는 거래 상대방에 있어 일방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발생하고 다른 쪽 입장에서는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앞에서 살펴본 채권과 채무의 거래 경우에도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수익비용거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설명하는 수익비용거래는 거래발생시 즉각적으로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 통신사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간의 전입금과 전출금에 대한 회계처리

- 일반회계 : (차변) 전출금 xxx (대변) 현금과 예금 xxx
- 통신사업특별회계 : (차변) 현금과 예금 xxx (대변) 전입금 xxx

3) 투자와 자본거래

투자과 자본거래는 거래 상대방에 있어 일방의 입장에서는 투자자산이 증가하고 다른 쪽 입장에서는 자본이 증가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이러한 거래는 현재의 정부내의 회계에 의한 거래의 결과 즉, 특정 회계, 사업, 조직 등 회계보고 단위의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정보통신부 및 우정사업본부의 회계의 경우에도 기업회계에 의한 결산을 하는 것은 「기업예산회계법」에 의한 통신사업특별회계에 한정되어 있어 자본의 개념을 다른 회계간의 거래의 경우에 적용함에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일반회계에서 통신사업특별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등에 제공하는 자금지원이 그 성격상 단순한 서비스 등의 대가, 재정보전을 위한 무상 지원적 성격 등이 아닌 해당 회계의 자본형성적인 성격을 가지는 지를 파악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거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한정적으로 우정사업본부의 내부거래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더욱 그러할

것으로 판단된다.⁵⁾

다. 예산관련성 기준에 의한 내부거래 유형

예산관련성을 기준으로 한 내부거래의 유형분석은 거래가 예산과 관련성을 가지고 발생하느냐의 여부에 따른 분류방식이므로, 거래의 발생에 있어 사전적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실을 근거로 하는지 또는 근거 없이 발생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1) 예산거래

예산거래는 발생한 거래가 당초에 편성된 세입세출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거래를 의미하므로, 세입예산의 실행에 따른 징수결의와 수납 및 세출예산의 집행에 따라 기업회계에 의한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의 변화가 발생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예산거래의 경우 예산과목 중 내부거래와 관련된 과목을 구분하여 파악하여 분석하게 되면, 회계(예 : 통신사업특별회계의 기업회계)상의 내부거래 유형분석과 함께 예산상 내부거래의 유형분석이 가능하다.

예)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 통신사업특별회계로 우체국직원의 노무비, 물자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전출금

2) 예산외 거래

예산외거래는 예산편성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으나, 정부의 공공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예산에 근거 없이 발생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예산외거래의 경우 예산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예산서가 아닌 회계(예: 통신사업특별회계의 기업회계)상 재무제표 등 결산내역 또는 현장조사를 통해 유형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볼 때 예산과 관련이 없으면서 동시에 내부거래적 성격을 가진 경우는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5) 중앙정부의 모든 예산회계의 집행, 결산 및 재무보고에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 방식이 적용된다면 좀더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 거래의 표출방식 기준에 의한 내부거래 유형

거래의 표출방식에 의한 내부거래 유형분석은 거래의 결과로 회계상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이 증감되어 결산서 등에 표시되는지 또는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과로 회계적인 자원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지에 따른 구분방식이다. 이러한 내부거래의 유형구분은 특히 정부내 부처간, 부서간 거래활동의 상당부분이 무상적인 서비스제공 및 수취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구분의 실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 표면적 거래

표면적 거래는 거래의 결과로 회계상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과 같은 요소들이 증감 변동되어 그 결과가 결산서 등에 표시되는 거래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내부거래가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표면적 거래를 예산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면 앞에서 제시된 예산거래와 예산외거래로 나눌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표면적 거래와 잠재적 거래의 구분은 (기업)회계적 관점에서의 분류이고, 예산거래와 예산외거래의 구분은 표면적거래의 예산관련성을 기준으로 한 세부분류라고 볼 수 있다.

2) 잠재적 거래

잠재적 거래는 표면적 거래와 달리 실질적으로 재화나 공공서비스가 제공되었으나, 거래의 결과가 회계처리에 의해 표시되지 않아 결산서 등 (예: 재무제표)에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래를 의미한다. 잠재적 내부거래는 단순한 회계분리를 통해서도 실질적으로 제거되기 어렵고 사전에 유형조사를 통해 정리한 후 무상이 아닌 대가수수를 취하는 것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하여야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즉, 잠재적 거래는 재무제표 등 결산내역을 통해서도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므로 실무상 충분한 현장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유형과악 및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다.

예) 우체국보험가입자에게 무료우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예산과 기업회계 관점에서의 내부거래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표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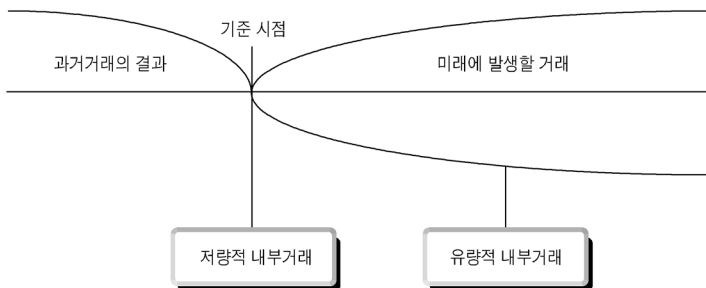
<표 3> 예산과 기업회계 관점의 내부거래 비교

구분	구분기준	세부구분	세부구분기준	조사증점
표면적 거래	회계상 거래로 인정되는 거래	예산거래	예산편성과 관련성을 가지는 거래	예산서/ 결산서
		예산외거래	예산편성과 무관한 거래	결산서
잠재적 거래	회계상 거래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실질적인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진 것			현장조사, 인터뷰

마. 거래의 흐름특성에 의한 내부거래 유형

거래의 흐름특성에 의한 내부거래 유형분석은 발생한 거래의 수정방식을 기준으로 한 분류방식이다. 즉, 결산처리 결과에 의해 내부거래를 수정함에 있어 미래적, 전진적으로 내부거래를 수정하는 것을 유량적 거래로 과거의 재정운영결과가 누적적으로 표시된 것을 수정하는 것을 저량적 거래로 보는 것이다. (기업)회계에 의한 결산서의 관점에서 볼 때 저량적 내부거래는 기준시점의 대차대조표(balance sheet)의 수정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거래흐름 특성에 의한 내부거래의 구분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5] 거래흐름 특성에 의한 내부거래 구분



1) 저장(stock)적 거래

(기업)회계상 대차대조표는 조직의 설립 시부터 특정시점(예: 회계연도말)까지의 누적적인 거래의 결과를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구분에 따라 정리한 재무제표이므로, 대차대조표에는 현재는 물론 과거에 발생한 모든 거래의 결과가 반영되게 된다. 즉, 저장적 거래는 이러한 대차대조표의 자산, 부채 및 자본과 관련된 내부거래를 의미한다.

저량적 내부거래의 결과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 기준시점의 대차대조표(balance sheet)를 각 회계 및 사업별로 자산, 부채 및 자본을 배부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배분의 방법으로는 각 사업 및 회계에 전용자산을 먼저 구분한 후 남겨진 공통자산은 객관적 기준(예: 기여도, 면적)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있다. 여기서 특정 사업 및 회계에 속하는 전용자산을 결정함에 있어 자산의 정의를 취득 시에 투입된 자금원천의 귀속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방법인 예산기준(豫算基準 또는 資金의 源泉基準)(예: 우편사업의 예산집행을 통해 취득한 건물은 우편사업에 속하는 자산으로 보는 방식)과 해당사업의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자산으로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방법(使用基準)(예: 우편사업의 예산집행으로 취득한 건물이나 현재 우편사업과 예금사업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전용자산이 아닌 공통자산으로 보아 객관적 기준을 정하여 배분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산기준에 의하는 경우 대부분의 자산이 우편사업에 귀속되어 예금부분의 자산규모가 해당 사업을 운영하기에 필요한 수준을 훨씬 밑돌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반면, 사용기준에 의하는 경우 많은 자산이 공통자산으로 분류되어 배분기준의 객관성 유지가 어려운 현실에서 임의적 배분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2) 유량적(flow) 거래

유량적 내부거래는 예산회계에 있어 예산과목을 통한 내부거래와 기업회계에 있어서의 계정과목을 통한 내부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우정사업 본부의 예산회계는 복식부기, 발생주의 방식에 의해 손익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어 기업회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연계함에 있어 문제가 없다. 유량적 내부거래와 관련된 사례로는 예산과목에 있어 일반회계전입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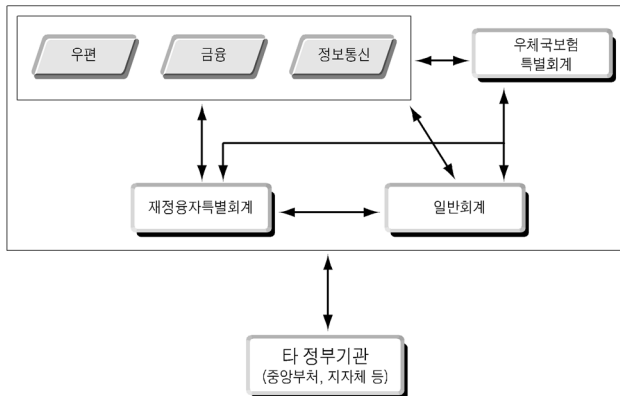
(세입 51)을 들 수 있고, 회계과목에 있어서는 타회계예탁금(기타자산), 일반회계 전입금(사업외 수익)을 들 수 있다.

Ⅲ. 우정사업의 내부거래 유형 및 유형별 사례

1. 우정사업의 내부거래 유형

내부거래의 개념적 구분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의 내부거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모델을 구성하면 [그림 6]과 같다. 여기서 점선내의 주체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를 내부거래 유형분석의 대상으로 보기로 하므로 내부거래 유형의 분석대상에는 타 정부기관과의 거래도 포함되는 것이다.

[그림 6] 우정사업 관련 내부거래의 관계도



상기와 같은 내부거래의 관계도를 기준으로 하면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내부거래 유형을 설정할 수 있다. 여기서 내부거래의 개념적 유형 중 단위별 기준으로 하여 우정사업본부의 구체적인 내부거래를 구분한 후 성격별 기준, 예산관련성 기준, 거래의 표출방식 기준, 거래의 흐름특성에 의한 기준 등은 세부적인 내부거래의 특성을 이해하고, 세부적인 예산 또는 회계적인 분석을 한 후 내부거래 상계 및 가격평가 대책을 수립하는데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우정사업에 있어 내부거래의

유형을 요약·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우정사업에 있어 내부거래의 유형

구분	내부거래의 유형
통신사업특별회계내의 거래(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사업과 금융사업간의 거래(Aa) - 우편사업과 정보통신사업간의 거래(Ab) - 금융사업과 정보통신사업간의 거래(Ac)
각 회계간의 거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보험특별회계간의 거래(Ba) - 일반회계간의 거래(Bb) - 통신사업특별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간의 거래(Bc) - 우체국보험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간의 거래(Bd) - 재정융자특별회계간의 거래(Be) -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간의 거래(Bf)
우정사업본부 조직내 거래(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와 체신청간의 거래(Ca) - 각 체신청 사이의 거래(Cb) - 체신청과 우체국간의 거래(Cc) -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간의 거래(Cd) - 각 우체국간의 거래⁶⁾
타 정부와의 거래(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사업특별회계와 타 정부기관과의 거래(Da) - 우체국보험특별회계와 타 정부기관과의 거래(Db) - 재정융자특별회계와 타 정부기관과의 거래(Dc) - 일반회계와 타 정부기관과의 거래(Dd)

한편, 우정사업본부와 관련된 각 회계(통신사업특별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재정융자특별회계, 일반회계)와 타 정부기관간의 거래를 'D'그룹으로 분류하였으나, 이 중 Dc와 Dd그룹의 경우 우정사업본부와 상당한 관계에 있지 못하므로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거래의 한 유형으로 보는 것은 일반회계로부터 통신사업특별회계로 이관된 사업 중 일부가 통신사업특별회계와 타 정부기관과의 거래에 해당하는 Da그룹으로 분류되는 것도 존재

6) 각 우체국간의 거래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점, 회계 분리 또는 사업분리에 있어 중요도가 덜하다는 점, 사업성과분석 등에 있어서도 사용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현실적으로 본 연구의 내부거래 연구대상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Da와 Db그룹의 거래사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되, 향후 정부의 각 부처별 성과평가의 기초 자료로써 Dc와 Dd그룹의 거래사례도 살펴보고자 함이 타당하다.

2. 우정사업의 내부거래 유형별 사례

내부거래 사례를 정리함에 있어서는 <표 4>에서 작성한 우정사업에 있어 내부거래에 대한 대분류 ABCD기준에 따라 각각에 속하는 내부거래의 유형을 기호로 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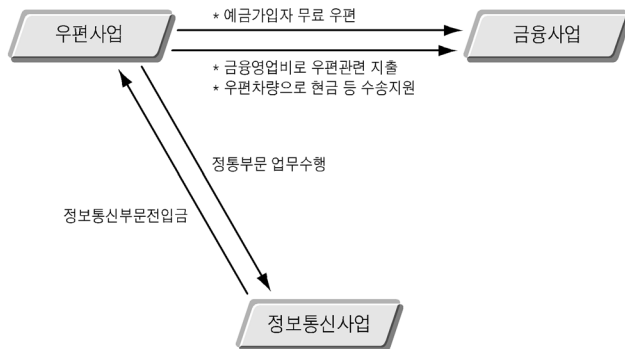
각 사례별 내부거래적 요소는 “2002예산 사업별 설명자료(2002.1, 정보통신부)” 및 우정사업본부 담당자와의 인터뷰 및 각 체신청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사례를 중심으로 그 내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A그룹 : 통신사업특별회계내의 거래

1) 개요

통신사업특별회계내의 각 사업(우편사업, 금융사업 및 정보통신사업)간의 거래인 A그룹과 관련한 거래유형을 요약·정리하면 [그림 7]과 같다.

[그림 7] 통신사업특별회계내의 거래



※ 실선(實線) : 서비스 또는 재화(물품)의 흐름
 점선(點線) : 자금의 흐름

통신사업특별회계내 각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정보통신부분전입금과 관련한 처리
 (우편사업) (차) 현금과 예금 xxx (대) 정보통신부분전입금 xxx
 (정보통신사업) (차) 우편사업전출금 xxx (대) 현금과 예금 xxx
- 예금가입자 무료우편과 관련한 처리
 (우편사업) “회계처리 없음”
 (금융사업) “회계처리 없음”
- 우편차량으로 예금 등 수송지원과 관련한 처리
 (우편사업) “회계처리 없음”
 (금융사업) “회계처리 없음”
- 금융영업비로 우편관련지출과 관련한 처리
 (우편사업) “회계처리 없음”
 (금융사업) “회계처리 없음”

2) 정보통신부분 전입금(Ab, Ac)

가) 내용

통신사업특별회계내 정보통신부분에서 우정부문으로 전입되는 원가보전금 및 지원금을 의미하며, 우정부문에서 정보통신부분 업무수행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사용료에 대한 원가보전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으로 산출된 내역은 <표 5>와 같다.

<표 5> 정보통신전입금의 2002년 예산요구 및 조정 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결산	2001예산(A)	2002예산		증(△)감	
			요구	조정(B)	(B-A)	%
정보통신부분전입금	-	157,502	83,329	19,789	△137,713	△87.4

자료 : 우정사업본부 내부자료

나) 시사점

우정사업 부문이라 하면 우편사업과 금융사업 부문을 의미하며, 산출내역으로는 우편부문과 금융부문 중 어느 특정사업 부문으로 전입되는 금액이라기보다 공통적 성격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거래의 성격은 통신사업특별회계내의 정보통신사업과 우정사업(우편사업과 금융사업)사업과의 내부거래의 성격을 띠고 있다.

3) 예금가입자에 대한 무료우편(Aa, Ab)

가) 내용

우정사업과 관련하여 금융사업에 있어 예금을 가입한 고객에게 각종 안내서 등을 우편을 통해 발송하는 경우 특별한 원가의 보전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무료우편을 의미한다. 이것은 통신사업특별회계내의 우편사업과 금융사업, 정보통신사업 등과의 내부거래에 해당된다.

나) 시사점

해당 무료우편을 증별로 그 요금에 해당하는 원가보전액을 산출하여 양 사업간 내부거래의 규모를 파악하고 그 가액을 산정할 필요성이 있다.

4) 우편차량으로 현금 등 수송지원(Aa)

가) 내용

일선 우체국에서 현금의 수송이나 지로용지 등의 수송에 있어서 차량을 이용하는데 이 경우 대부분의 차량이 우편부문에 귀속되어 있는 바, 이러한 차량의 수송지원은 내부거래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인력의 경우도 우편사업 부문의 인력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러한 인력지원도 내부거래적 요소로 볼 수 있다. 또한 가끔 직원의 출퇴근용 자가용차량으로 수송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직원개인과 금융사업간의 내부거래로 볼 수 있다.

현재 우정사업본부 조달사무소에서 일괄로 계약하여 현금수송 전문업체에 수송을 의뢰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조달사무소에서 입찰에 의해 업체를 선정하였으므로 그 거래실례가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차량을 이용하여 자금이나 과초금을 운송하는 방법은 직영운송, 위탁운송(통신사무 등기로 접수하여 우정사업진흥회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용역운송

(조달사무소에서 현금수송 전문업체에 일괄계약에 의해 운송하는 경우) 등 3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나) 시사점

현금수송의 경우 그 중요성이나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여 그 적정가액을 산정하여 그 규모를 파악하여야 한다. 여기서 지역운송의 경우는 우편사업과 금융사업간 내부거래로 볼 수 있으나, 위탁운송의 경우는 통신사무 등기로 처리하기 때문에 양 사업간의 내부거래인 것은 분명하나 무료우편 통계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용역운송의 경우 현금수송 전문업체와 일괄계약에 의해 운송하고 있다.

운송방법의 차이에 따라서 투입비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에 의해 운송이 이루어 질 경우에는 각각의 방법에 따른 투입소요 비용을 표준적으로 산출하여 총운송 규모에서 각 운송방법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그 비율만큼 곱해주면 각각의 운송방법에 따른 소요비용을 산출 할 수 있다. 한편, 전복체신청의 조사에서 의하면 운송에 있어서 인력의 지원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비용의 계산에는 인력의 지원 부분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다.

5) 금융영업비로 우편과 관련된 비용지출(Aa)

가) 내용

금융영업비로 편성된 예산으로 우편사업의 필요경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그 재원이 금융사업의 것이라는 점에서 내부거래로 볼 수 있다. 비용의 성격은 플랭카드 제작비 등으로 일상 경비적 성격의 경비지출이며, 그 내역의 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나) 시사점

현재 지출한 내역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지출내역을 중심으로 실비보상적 측면에서 그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예산편성은 우편영업비, 금융영업비, 보험영업비 등이 분리되어 있으나, 집행상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예산편성시 일선 우체국의 영업비 집행실태를 반영하여 편성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6) 우편주문판매(Aa)

가) 내용

전국 모든 우체국에서 해당지역의 특산물을 우편주문판매를 통해 배달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우편주문판매에 따른 수익은 배달에 따른 수입이 발생하게 되나, 우편주문판매에 대한 역할은 우편과 금융부서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면 우편사업과 금융사업에 적절한 방법에 따라 수익을 귀속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 이유는 대금결제에 경우 금융사업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나) 시사점

이 경우 수익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편부문의 배달에 따른 수입과 이 수입에 대한 금융부문의 우편세입의 계좌관리에 따른 자금운영수익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내부거래적 요소는 우편부문의 배달에 따른 우편세입에 대한 금융부문의 자금운영수익이 발생하며 이러한 것은 우편사업과 금융사업간의 내부거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금운영수익은 우편사업과 금융사업간에 일반적으로 우편세입을 일괄적으로 금융부문에서 운영해오고 있으므로 현재 우정사업본부의 하나의 관행으로 보이나, 이는 사업의 구분을 엄격히 할 경우 세입을 일으키는 주체와 이를 운영하는 주체가 엄연히 다르므로 이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최근 5년간 우편주문판매의 실적 추이는 <표 6>에서 보듯이 우편세입의 경우 1997년 3,560백만원에서 2001년 11,756백만원으로 3.3배 증가하였으며, 매년 20~30%의 성장하고 있다.

<표 6> 우편주문판매 실적 추이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취급건수(천건)	1,424	1,591	2,361	3,752	4,521
상품대금(백만원)	33,195	35,528	50,316	78,850	90,892
우편세입(백만원)	3,560	4,357	6,351	10,186	11,756

자료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백서", 2002. 11

7) 공통비의 내부배분

가) 내용

우체국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우편사업, 금융사업 및 정보통신사업과 관련된 비용들로 개별적으로 각 사업부문에 귀속 가능한 비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개의 경우 비용들이 개별비용의 성격 비용보다는 공통비적인 성격이 현재 많이 존재하고 있다.

나) 시사점

이러한 공통비용을 우편사업, 금융사업 및 정보통신사업으로 각 사업부문으로 배분하는 것(회계분리) 자체가 일종의 내부거래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광화문우체국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넷 프라자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들은 우편사업, 금융사업 및 정보통신사업에 공통적으로 공헌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통비의 내부배분 또한 내부거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나. B그룹 : 각 회계간의 거래

1)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Bb)

가) 내용

우정사업과 관련 타 회계로부터의 내부거래 유형은 일반회계전입금, 특수우편업무 수탁집행경비 및 우체국보험사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에 의거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통신 제한 조치를 의뢰받을 경우 특수우편업무를 수탁집행하고 있으며, 동 수탁집행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제18조에 의거 1996년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부터 통신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전입하고 있다. 특수우편물 수탁집행경비의 유형은 불온우편물 검열 인건비 등 (일반회계와 통신사업특별회계의 우편사업간 거래: Bb), 청와대 경호통신(일반회계와 통신사업특별회계의 정보통신사업간 거래: Bb)이 있다. 우체국보험업무 수행을 위하여 부담한 노무, 물자 경비 등 보전경비 등을 우체국보험사업특별회계로부터 전출 통신사업특별회계로 전입하고 있다. 타 회계로부터 통신사업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으로 산출된 내역은 <표 7>과 같다.

〈표 7〉 타 회계로부터 통신사업특별회계로의 2002년 예산요구 및 조정 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0결산	2001예산 (A)	2002예산		증(△)감	
			요구	조정(B)	(B-A)	%
일반회계전입금	3,948	35,400	4,200	4,075	△31,325	△88.5
특수우편업무 수탁집행경비	3,948	35,400	4,200	4,075	△31,325	△88.5
우체국보험사업특별회계 전입금	77,939	123,628	133,936	133,936	10,308	8.3
합 계	81,887	159,028	138,136	138,011	△21,017	△13.2

자료 : 우정사업본부 내부자료

나) 시사점

불운우편물 검열에 따른 인건비 등은 그 산출내역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그 규모를 알 수 있다. 또한 통신사업특별회계에서 우체국보험업무 수행을 위하여 부담한 노무, 물자 경비 등 보전경비에 대한 산출내역도 존재하므로 이에 따라 그 규모를 알 수 있다.

2) 보험가입자에게 대한 무료우편(Ba)

가) 내용

이는 통신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보험특별회계간의 내부거래로 보험가입자에게 보내는 통신사무를 의미한다. 우편사무의 경우 우편의 종류가 등기보통으로 되어 있는 반면, 통신사무의 경우 그 우편의 종류가 특급우편으로 한정되어 있다.

나) 시사점

통신사무의 경우 발송내역 즉, 우편발송의 수량 파악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우편의 종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가액의 결정은 결정된 사항에 따라 적정가액의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기타의 이자수입(Bc)

가) 내용

이는 통신사업특별회계에서 재정용자특별회계에 맡긴 것에 대한 이자수취 분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자수취 분의 경우 그 이자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

나) 시사점

현재 다른 일반예금과의 이자율 등을 참조하여 내부거래로써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예금의 형태에 따른 이자율과 일반예금과의 같은 예금형태에서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비교하여 같을 경우 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나, 다를 경우 이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내부거래로서의 성격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4) 국고세입금의 수납업무 대행(Ba)

가) 내용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를 고지서에 의하여 수납한 후 해당 세입징수관에게 수납 금액을 결제하여 주는 업무와 과납시 환급하여 주는 업무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해당국세는 법인세, 소득세 등의 국세와 항만청 세입금, 조달청 조달물자 세입금 등의 기타 국고 세입금을 대상으로 한다.

나) 시사점

이러한 대행 업무는 자금의 이전뿐만 아니라 업무대행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대행업무 대상이 정부 또는 타 정부기관인 경우 내부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C그룹 : 우정사업본부 조직내 거래

1) 군사우편의 수입계상 주체에 따른 내부거래(Cb)

가) 내용

군사우편물 접수 등의 실무처리는 현업우체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가를 서울체신청에서 현업우체국에서의 군사우편물 접수 데이터를 집계하여 일괄적으로 수입계상하고 있다.

나) 시사점

서울체신청과 타 체신청간의 거래내역은 각 체신청별 군사우편 취급물량을 조사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면 그 규모를 알 수 있다.

2) 충청체신청의 전자우편처리센터(Cb)

가) 내용

전자우편의 경우 발송업무를 동서울집중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발송물량이 집중될 경우 대전집중국에 이 업무를 일부 위탁하고 있는데 이는 대전집중국과 동서울집중국간의 발생하는 문제이다.

나) 시사점

현재 텔슨이빌이라는 회사에서 대전지역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우편물 처리물량에 대한 파악과 이에 대한 적절한 판단이 필요하다.

3) 물품업무 중 연하장 판매 등(Ca, Cd)

가) 내용

물품업무 중 연하장 판매와 관련한 거래 유형으로 우정사업본부와 체신청(Ca),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Cd)간 거래가 있다.

물품업무에 있어 조달의 방식으로는 중앙조달과 지방조달이 있다. 중앙조달의 경우 우정사업본부에서 일괄 구매하여 직접 우체국으로 내려주거나 (예: 우표), 일괄 구매한 것을 각 체신청을 거쳐 우체국으로 내려주는 경우 (예: 연하장)가 있다. 조달방식의 구분은 주로 조달주체와 조달에 사용되는 예산에 따라 구분되고 있다. 예를 들어 중앙조달의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의 예산이 사용되나, 지방조달의 경우에는 각 체신청의 예산으로 사용된다.

한편, 중앙조달 중 각 체신청에서 본부에 요청을 하고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요청 내역에 따라 제작·구매한 후 다시 체신청을 거쳐 우체국으로 내려주는 경우도 있다. 지방조달은 각 체신청에서 우체국에 대한 물품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된 내역을 바탕으로 청예산을 사용하여 제작·구매한 후 각 우체국으로 내려주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 각종 식지류-금융식지류, 우편식지류, 장비)

실 사례로서 “나만의 우표”의 경우를 보면 판매 및 영업은 우체국에서 담당하고 제작은 2곳에서 담당하는데 우표부문 제작은 조폐공사에서 담당하고 있고, 사진첨부 작업은 체성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 경우 세입의 처리에 있어서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제작비용을 부담하되, 세입은 우체국에서 계리하고 있다.

나)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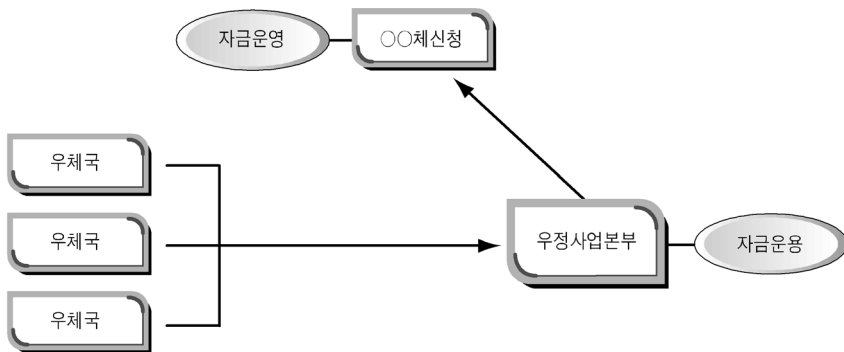
연하장의 경우 우정사업본부에서 주문 제작한 후 각 체신청으로 내려주고 체신청은 각 우체국으로 내려줘서 판매는 각 우체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의 경우 우체국의 세입으로 잡히고 있다. 이에 대한 판매수익은 우체국의 수익으로 잡힐 경우 우정사업본부와 체신청간에는 업무협조에 따른 내부거래적 요소가 있고,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간에는 판매수익의 무상 지원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부거래적 요소가 있다.

4) 우정사업본부와 체신청간 대차거래(Ca)

가) 내용

우체국예금의 수신업무는 각 우체국에서 담당하고 그 수신된 예금은 체신청을 거치지 않고 우정사업본부로 직접 보내진 후 우정사업본부에서 각 체신청의 상황 등에 따라 일정 금액을 체신청에 다시 내려주고 있다. 결국 각 개별 우체국에서 수신한 예금의 대부분은 우정사업본부에서 직접 자금을 운영하여 운영에 따른 수익을 취하고 있으며, 일부의 예금에 대해 각 체신청에 내려진 금액은 각 체신청에서 타 금융기관에 적절히 예치하여 운영에 따른 수익을 취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와 체신청간의 자금운영 관련 대차거래의 업무 흐름도는 [그림 8]과 같다.

[그림 8] 우정사업 관련 우체국금융의 자금운영 대차 업무흐름도



나) 시사점

이는 우정사업본부와 체신청(또는 우체국)간의 내부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엄밀히 처리하자면 자금조달처별로 자금운영 수익을 계상하는 것이 우정사업본부와 체신청(또는 우체국)간 책임회계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라. D그룹 : 타 정부와의 거래

1) 군사우편(Da)

가) 내용

군사우편의 경우 서울체신청에서 일괄적으로 국방부와 정산을 하고 있으며, 군사우편 자체는 통신사업특별회계와 타 정부기관과의 거래이다.

나) 시사점

현재 군사우편물의 가격결정은 서울체신청과 국방부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만 군사우편물의 정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가격에 대한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볼 필요성이 있다.

2) 후납계약자 담보금(Da)

가) 내용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등에 대하여 담보금을 면제하는 경우이다.

나) 시사점

특별한 경우의 면제이지만 정부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일종의 내부거래의 유형이라 할 수 있다.

3) 국회의원 의정보고서 발송우편(Da)

가) 내용

통신사업특별회계와 국회, 즉 타 정부기관과의 내부거래에 해당된다.

나) 시사점

다른 우편물의 할인율보다 현저히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차액계상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4) 무료입주 우체국(Da)

가) 내용

법원내부에 설치된 우체국의 경우 그 임차료의 지불이 없이 무상으로 입주하여 우체국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내부거래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나) 시사점

통상적인 임차료를 계상해 봄으로써 그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현재 무료입주 우체국의 유형은 대형빌딩, 대학교, 공공기관 등으로 각 총괄우체국 단위로 현재 관리되고 있으며 전국에 무료입주 우체국은 210여 곳이 있다. 2001년말 현재 각 체신청별 무료입주 우체국현황은 <표 8>과 같다.

<표 8> 체신청별 무료입주 우체국 현황

청 별	서울청	부산청	충청청	전남청	경북청	전북청	강원청	제주청	합계
무료입주 우체국수	83	34	33	13	27	9	10	1	210

자료 : 우정사업본부 내부자료

5) 정보화촉진기금을 우체국에 예금하는 행위(Da)

가) 내용

최근 신문에 정보화촉진기금을 우체국에 집중적으로 예치하고 있으며 예치이율 또한 타 시중은행에 예치하는 것보다 예금금리가 낮다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으며, 이러한 거래도 일종의 불공정 내부거래로 해석할 수 있다.

나) 시사점

일반적인 기금의 예치이율과 비교하여 그 차액을 계상해 봄으로써 그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마. 내부거래 유형의 종합

우정사업 종사와의 면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우정사업본부의 내부거래 유형으

로 총 23건 있으며 각 사유별 내부거래의 발생된 빈도를 요약·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9> 현장조사에 따른 우정사업본부의 내부거래 유형에 따른 반생빈도수

유형구분	내역	유형수
통신사특별회계내의 거래(A)	A(1): Aa(4), Ab(2), Ac(1)	8
각 회계간의 거래(B)	Ba(2), Bb(1), Bc(1)	4
우정사업본부 조직내 거래(C)	Ca(3), Cb(2), Cd(1)	6
타 정부와의 거래(D)	D(5)	5
계		23

IV. 내부거래의 가격설정 대안 및 유형별 가격설정

1. 내부거래의 가격설정 대안

가. 가격결정을 위한 고려요소

1) WTO 서비스 협상과 관련한 가격결정시 고려사항

WTO 서비스 협상과 관련한 가격결정에 있어서는 가격의 적정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가격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내부거래의 가격이 정상가격(正常價格)수준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거래와 제3자와의 거래 간에 비교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와 재화의 종류와 특성, 시장여건의 변화, 계약조건 등의 요소가 분석되어야 한다.

둘째, 가격산정을 위해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 및 이용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가격산정 내역의 객관성 유지여부는 얼마나 완전하고 정확한 자료(예: 원가자료)를

확보하느냐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2) 사업별 성과측정을 위한 가격결정시 고려사항

우정사업에 있어 우편사업, 예금사업 및 보험사업의 각 사업별 경영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첫째, 목표일치성 기준이다. 각 사업의 목표는 물론 우정사업 전체의 목표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부거래의 가격이 설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성과평가 기준이다. 각 사업의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부거래의 가격이 설정되어야 한다.

셋째, 자율성 기준이다. 각 사업별로 자율적으로 내부거래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각 사업별 책임자가 해당 사업의 목표를 극대화하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격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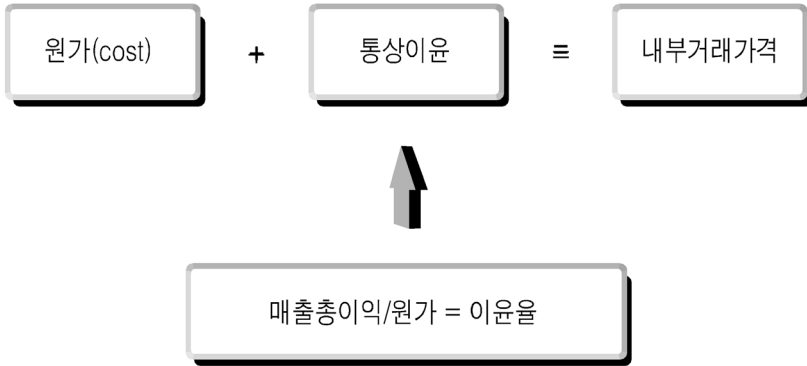
나. 원가가산법

1) 개념

서비스의 제공 또는 자산의 매각과 같은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原價)에 서비스 제공자 또는 자산 매각자의 통상적인 이윤(利潤)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거래 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서비스 또는 자산의 “제공자(매각자)”를 중심으로 거래가격을 산정 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통상적인 이윤은 서비스 제공자 등이 특수 관계에 없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원가에 대한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의미한다. 원가계산법의 계산구조는 [그림 9]와 같다.

[그림 9] 원가가산법의 계산구조



2) 장·단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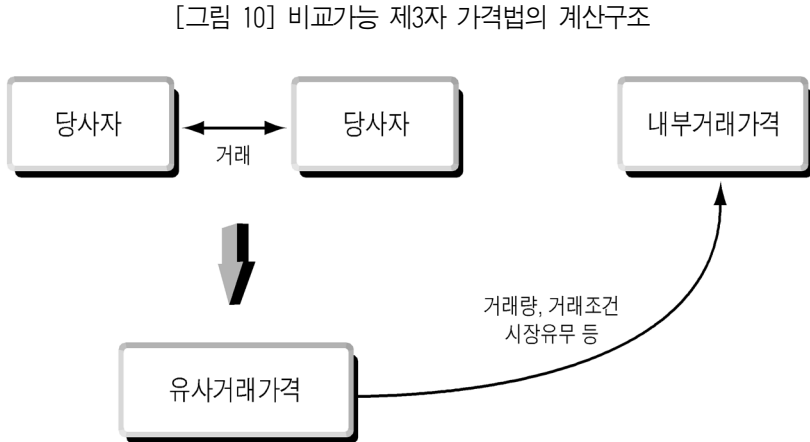
장점으로 내부거래의 대상인 서비스 또는 자산에 대해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특히, 독점사업의 경우가 그러하다), 동일한 품질의 비교 가능한 가격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격산정을 위한 현실적인 대체 안이 될 수 있다. 단점으로 서비스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원가계산을 실시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이 소요되며, 조직내부에서 적절한 원가정보의 생성이 어렵거나 신뢰성이 적은 경우에는 거래가격도 합리적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1) 개념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제3자와의 유사한 거래에 있어 적용되는 가격을 거래 가격으로 하는 방법이다. 내부거래와 비교 가능한 거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거래에 있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양 거래주체가 독립적이어야 한다. 즉, 거래당사자가 서로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사업자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비교대상 거래가 내부거래와 유사(즉, 거래수량, 거래조건, 시장의 유무 등 조건)하여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의 계산구조는 [그

림 10]과 같다.



2) 장·단점

장점으로 객관적인 당사자간의 가격을 적용한다는 면에서 이론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단점으로 독립된 당사자간의 거래이면서 내부거래와 유사성을 동시에 가지는 거래를 찾아야 하는 한계가 있어 실무적으로 적용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라. 표준가격법

1) 개념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내부거래에 의한 서비스 등과 유사한 서비스 등에 적용되는 표준가격(標準價格)을 내부거래 가격으로 적용하는 방법이다.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이 내부거래와 유사한 거래의 존재를 전제로 함에 비해 이 방법은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가격(예: 물가정보지에 의한 가격)을 거래가격의 기준으로 채택하는 것이다.

2) 장·단점

장점으로 내부거래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 물품 등에 대한 유사 거래사례를 찾기 어려운 경우 등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간편하게 가격을 파악할 수 있다. 단점으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과 마찬가지로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 가격을 찾기 어렵거나 또는 유사한 가격이 몇 가지 있는 경우 임의적인 기준에 의해 가격을 선정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마. 재판매가격법

1) 개념

거래가 이루어진 후 자산의 구매자(거래의 일방)가 특수 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그 판매가에서 자산구매자의 통상이윤을 차감한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는 방식이다.

2) 장·단점

장점으로 내부거래의 당사자 일방과 외부의 제3자 간의 거래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래가격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단점으로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대상이 기본적으로 “자산”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내부거래의 유형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서비스에 의한 내부거래에는 적용할 수 없음)과 최초의 구매자가 구매한 자산을 단순히 재판매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실제로 대상이 되는 거래의 가격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바. 이익분할법

1) 개념

거래의 양당사자가 실현한 순이익을 거래당사자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분하고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것을 거래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 거래에 따른 순이익을 거래당사자간에 배분하는 기준은 각 당사자의 공헌도에 의하는데 이는 서비스 또는 자산취득에 따른 비용, 용역제공을 위한 자산사용액, 수행기능의 중요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내부가격이다.

2) 장·단점

장점으로 특수 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 발생된 이익을 각 당사자간의 역할 등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이란 점에서 내부거래와 관련된 가격으로 적용하는데 있어 좋은 방식이 될 수 있다. 단점으로 상당수 내부거래가 이익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볼 때 기업회계의 연결대상회사(법적으로는 독립적이거나 경제적 실질 면에서 하나의 단위로 보는 회사)간의 거래에 사용되기 쉬운 방법이다.

사. 거래순이익율법

1) 개념

특수 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 중 당해 내부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거래순이익율을 기초로 산정한 가격을 내부거래 가액으로 보는 방법이다. 여기서 거래순이익율이란 매출, 자산 또는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등과 거래순이익과의 비율을 의미한다.

2) 장·단점

장점으로 산정된 내부거래 가격의 타당성을 전체적으로 검증하거나 확인하는 경우에는 유용성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이다. 단점으로 유사한 내부거래의 존재가 전제되어 있으므로 유사성 여부의 임의성 또는 거래가 없는 경우에 있어 적용하기에는 다소 곤란한 면이 있다.

아. 협상가격법

1) 개념

내부거래의 양당사자간의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을 내부거래 가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협상가격(negotiated price)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거래대상이 되는 서비스, 재화 등에 대한 시장이 어느 정도 존재하며 시장에 대한 정보를 내부거래의 당사자들이 공유해야 하여야 하고, 나아가 사고파는 의사결정에 있어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2) 장·단점

장점으로 거래대상의 서비스 또는 재화에 대해 완전 경쟁적 시장이 없거나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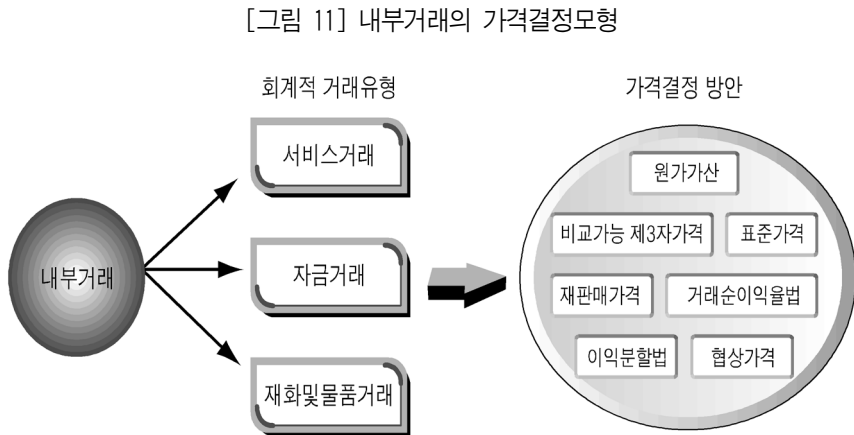
가를 기준으로 하는 산정방법들의 문제점이 많을 경우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다. 단점으로 양당사자간의 협상에 있어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2. 내부거래의 유형별 가격설정

가. 가격결정모형

내부거래를 유형별로 거래가격 산정을 위해서는 회계적 특성을 반영한 구분이 보다 의미가 있다. 여기서 회계적 특성을 반영한 구분이란 내부거래의 유형이 서비스의 제공, 자금의 지원, 물품 또는 재화의 제공 중 무엇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구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내부거래에 있어 현재 무상(無償)으로 지원하는지 또는 유상(有償)으로 제공되는지는 크게 의미가 없다. 그 이유는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경우 새로이 합리적인 가격산정을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고 유상인 경우에는 현재 수수되는 대가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부거래의 가격결정 모형은 [그림 11]과 같다.



나. 서비스거래

1) 개념

서비스거래란 내부거래의 당사자 일방이 다른 상대자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우정사업본부에 있어서는 각 사업간에 즉 우편사업, 금융사업 및 보험사업 상호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부거래를 의미한다. 우정사업본부의 각 사업이 기본적으로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기본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물론 사용자상의 매각과 같은 비경상적 업무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임) 서비스거래는 내부거래의 경우에 있어서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 종류

서비스거래는 특정 서비스 전체를 제공하는 경우(예: 소포서비스를 제공)와 같이 우편서비스의 창구업무부터 최종적인 배달업무까지 전체를 제공하는 경우와 특정 서비스의 일부만을 제공하는 경우(예: 창구업무만을 제공)로 구분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부분 독특한 특성을 가지는 서비스이나 일부 서비스의 경우 예를 들면 우편서비스 중 배달 업무만을 놓고 본다면 민간부문에 동종 업무를 하는 자가 존재하여 시장가격 또는 표준가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독특한 특성을 가지는 서비스 전체를 제공하여(예: 통상우편) 시장에서 유사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해 자체의 원가를 기준으로 한 원가가산법과 같은 다른 방안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와는 가격결정을 위한 방법선택에 있어 차이가 있다.

3) 가격산정을 위한 방법

가) 서비스 전체를 제공하는 거래의 경우

우정사업본부에서 제공하는 우정서비스의 경우 고유한 서비스로 시장에서 해당 서비스와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독점적 사업인 우편사업의 경우에는 일부사업(예: 택배사업)을 제외하고는 유사사례를 찾기 더 더욱 어렵다. 그러나 경쟁적 시장이 존재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시장가격 또는 표준가격과 같은 동종 또는 유사사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거래에 대한 가격총액은 다음 산식에 의해 산출할 수 있다.

$$\text{거래에 대한 가격총액} = \text{우편물량} \times \text{내부거래 가격단가}$$

나) 서비스 유형별로 가격선정 대안 중 적용 가능한 방법

① 우편(통상) 및 일반소포

우정사업본부가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또는 “원가가산법” 등을 사용될 수 있다.

② 택배(방문소포)

시장에서 민간택배업체들이 존재하는 서비스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또는 “원가가산법” 등을 사용될 수 있다.

③ 금융(예금) 및 보험

시장에서 타 금융기관, 보험사 등이 존재하는 서비스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또는 “원가가산법” 등이 사용될 수 있다.

④ 일반행정서비스

일반회계 등의 회계에서 타 회계에 대해 행정서비스의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공공재의 특성상 일반 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장을 찾기 어려우므로 “원가가산법” 또는 정부원가방식에 의한 “표준가격”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다) 특정서비스의 일부만을 적용하는 경우

중간서비스의 특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 즉, 배달업무와 같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시장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창구업무와 같이 시장을 찾기 어려운 중간서비스의 경우에는 “거래순이익율법” 또는 “원가가산법”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자금거래

1) 개념

자금거래란 내부거래의 당사자 일방이 다른 상대방에 대해 직접적인 자금 또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우정사업본부의

본질적인 업무가 우편사업, 금융사업, 및 보험사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이므로, 자금거래는 부수적인 거래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종류

자금거래의 종류에는 통신사업특별회계내 각 사업간의 거래와 타 회계 또는 기금(예: 일반회계, 재정용자특별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정보화촉진기금)과 관련된 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3) 가격산정을 위한 방법

통신사업특별회계내 각 사업간의 자금거래는 현재 회계구분이 되어 있지 않는 특성을 고려하여 “이익분할법” 등이 사용될 수 있다. 다만, 타 회계 또는 기금과 관련된 경우에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라. 재화 및 물품거래

1) 개념

재화 및 물품거래란 내부거래의 당사자 일방이 다른 상대방에 대해 재화 또는 기타의 자산 등을 판매 또는 무상제공의 방법을 통해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우정사업본부의 본질적인 업무가 우편사업, 금융사업, 및 보험사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이므로, 재화 및 물품거래는 부수적인 거래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2) 종류

재화 및 물품거래의 종류에는 거래되는 재화 등의 특성에 따라 신문에 대한 거래와 구품에 대한 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3) 가격산정을 위한 방법

신상품의 경우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존재하므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구상품의 경우에는 시장의 존재여부를 고려하여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또는 “협상가격법”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 사례분석

1) 정보통신부문전입금

가)내용

정보통신부문전입금이란 통신사업특별회계내 정보통신사업부문에서 우정사업 부문으로의 인건비 및 시설사용료에 대한 원가보전금의 성격이다. 동일한 금액이 정보통신사업부문에서는 “우정사업부문 전출금”으로 하여 세출에 계상되어 있는 바 이미 정보통신사업부문과 우정사업부문에서 각각 내부거래로 인식할 수 있다.

나) 추천대안: 원가가산법

현재는 인건비 및 시설사용료에 대한 원가만을 산정하여 전입금 또는 전출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개념적으로 사업별 성과평가 등을 위해서는 원가에 적정이윤(適正利潤)을 가산한 원가가산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내부거래 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예금가입자에 대한 무료우편

가) 내용

예금가입 고객에 대해 별도의 요금을 받지 않고 각종 고지서 등을 발송해주는 경우이다. 이 부문의 은 회계결산에 내부거래로서 인식되지 않고 특별히 원가의 보전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 추천대안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독점부문인 우편사업에서 경쟁부문인 금융사업에 대해 무상으로 우편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므로 특수 관계가 없는 제3자(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가격(우편요금)과 동일한 가격을 내부거래의 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체국 보험가입자에 대한 무료우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3) 우편차량에 의한 현금 등 수송지원

가) 내용

우체국에서 현금, 지로용지 등의 수송을 별도의 요금을 수취함이 없이 우편차량을 이용하여 수송해 주는 경우이다. 회계결산에 있어 별도로 내부거래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

나) 추천대안: 표준가격법 또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독점부문의 우편사업에서 경쟁부문인 금융사업에 대해 무상으로 우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나, 수송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운송업체 또는 현금수송업체에서 적용하는 가격을 내부거래의 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4) 우편주문판매

가) 내용

지역특산물을 소비자로부터 받은 우편주문에 따라 배달하는 것이다. 회계결산에 있어서는 별도로 내부거래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

나) 추천대안 : 이익분할법

우편주문판매는 성격상 우편사업부문과 금융사업부문이 동시에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특징이 다. 따라서 우편주문판매에 따른 이익은 2사업 부문에서 함께 실현한 것이므로 각 사업부문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이익을 배분할 필요성이 있다.

5) 충청체신청의 전자우편처리

가) 내용

전자우편의 경우 동서울집중국에서 발송을 담당하고 있으나 물량 집중시 대전집중국(충청체신청)에서 일부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경우이다. 업무를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대전집중국(충청체신청)과 동서울집중국 사이에 처리에 따른 수익배분이 되지 않고 있다.

나) 추천대안: 협상가격법

각 당사자간에 원가정보 또는 유사서비스에 대한 가격정보를 기초로 협상을 통해 성과평가를 위한 적정한 내부거래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V. 우정사업의 사업간 거래의 합리적 가격산정 방안

1. 정보통신부문 전입금

가. 내용

다음의 산출내역은 현재 우정사업본부에서 산출하는 방식이며 “2002예산 사업별 설명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2000회계년도 정보통신부문 결산상 원가 보전금 : 16,795백만원

- 전과국 등 462명의 결산상 원가명세서와 예산액과의 차액: 10,512백만원

※ {20,477백만원(원가) - 10,465백만원(지출)} X 1.05 = 10,512백만원

2000년회계년도 우정사업과 관련된 정보통신부문 결산상 원가 및 예산과의 차액 내용은 <표 10>과 같다.

<표 10> 2000회계년도 정보통신부문 결산상 원가 및 예산액과의 차액 내용

(단위 : 백만원)

관서별	결산상 원가명세서		예산 지출액	차 액	비 고
	인원	비용			
서울청	104	3,746	1,868	1,878	인건비
부산청	74	2,620	1,494	1,126	“
충청청	49	1,751	1,085	666	“
전남청	63	2,543	1,178	1,365	“
경북청	53	1,969	1,099	870	“
전북청	40	1,479	892	587	“
강원청	31	1,420	854	566	“
제주청	15	556	448	108	“
전산소	32	3,864	1,301	1,563	“
조달소	1	529	246	283	MIC핸디, 서버리스료 및 LAN유지비
합 계	462	20,477	10,465	10,012	

- 무선국 인허가 및 전파사용료 수납요원 인건비 : 6,283백만원

※ 283국 X 1명 X 26,400천원 = 6,283,200천원

○ 시설사용료 : 1,195백만원

2000회계년도 정보통신부분에서 우정사업관련 시설사용에 따른 시설사용료 산출 내용은 <표 11>과 같다.

<표 11> 2000회계년도 정보통신부분의 우정사업 관련 시설사용료 산출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결산원가 (평가액)	사용요율	정보통신 점유율	규모차이	부 담 액
토 지	2,174,160,531	0.025	1.863% (인원)	1.0308X1.0308	1,075,953
건설가계정	212,416,163	0.025	1.863% (인원)	1.0966X1.0966	118,970
계	2,386,576,694	-	-	-	1,194,923

※우체국보험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의 산출기준과 동일하며, 정보통신점유율은 1.863% 적용{(462명+238명)/37,570명}

○ 기타 공공요금 등 제경비 : 1,799백만원

- 17,990백만원(인건비 및 시설사용료) X 10% = 1,799백만원

○ 정보통신부문 원가 보전금: 19,789백만원

- 16,795백만원(결산상 원가 보전금) + 1,195백만원(시설사용료) + 1,799백만원(제경비) = 19,789백만원

나. 가격산정법: 원가가산법

원가가산법을 적용하기 위해 이윤의 추정이 필요하며, 2000년도 정보통신부분의 사업별 이익율(사업별원가/사업수익)을 이윤율로 적용한다고 보아 이윤율을 추정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 2000회계년도 우정사업 관련 정보통신부문의 이익률 산출내용

(단위 : 백만원)

정보통신부문 총원가(A)	정보통신부문 사업수익(B)	원가율 (A)/(B)	이익률 (B-A)/B
246,076	247,663	99.76%	0.24%

상기의 이윤율을 근거로 하여 정보통신부문 전입금에 추가한 즉, 원가가산법에 의한 전입금 금액을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 정보통신부문 전입금: 19,836백만원

- 정보통신부문 원가 보전금(19,789백만원) × (1+0.24%) = 19,836백만원

2. 무료우편

가. 내용

2001년도 금융, 보험 및 정보통신부문에서 무료로 발송된 우편 물량 및 금액은 〈표 13〉과 같다.

〈표 13〉 2001년도 무료우편 물량 및 금액

(단위 : 통, 원)

종별		금융	보험	전과 (정보통신)	기타	합계
일반통상	통수	5,549,252	9,917,216	541,654	1,348,062	17,356,184
	우편요금	1,048,578,066	1,340,746,940	65,866,877	314,588,790	2,769,780,673
특수통상	통수	10,157,208	4,013,012	571,178	500,711	15,242,109
	우편요금	20,541,144,568	2,404,289,760	568,230,884	727,378,188	24,241,043,400
소 포	통수	93,801	85,475	1,819	37,703	218,798
	우편요금	209,617,456	184,566,562	4,484,107	96,309,447	494,977,572
합 계	통수	15,800,261	14,015,703	1,114,651	1,886,476	32,817,091
	우편요금	21,799,340,090	3,929,603,262	638,581,868	1,138,276,425	27,505,801,645

자료 : 우정사업본부 내부자료 (2002. 9. 23)

나. 가격산정법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상기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예금가입자에 대한 무료우편 금액은 약21,799백만원(2001년 기준)이고, 보험가입자에 대한 무료우편은 약3,929백만원 수준이다. 한편, 정보통신부문 등에 대해 이루어지는 무료우편의 경우에도 별도로 기술되어 있지는 않으나 회계간의 내부거래로 보아 예금가입자 또는 보험가입자에 대한 무료우편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 우편차량에 의한 현금수송

가. 자금 및 과초금 운송횟수

자금 및 과초금의 운송사례와 관련하여 전복체신청에 대한 단기간(조사기준 : 2002년 9월 1일~9월 30일)동안 조사한 내용은 <표 14>와 같다. 참고로 전복체신청의 경우 용역운송은 조사일 현재 없다.

전복체신청의 경우 과초금 운송과 관련하여 저녁시간에 각국에서 1명을 진흥회에 지원하여 진흥회차량을 이용하여 진흥회직원 1명, 우체국직원 1명이 우편물과 과초금을 수거함(이 경우는 우편등기로 접수하여 우편요금에 부과됨), 또한 우체국 자체차량을 이용하여 자금, 과초금 운송을 하는 경우는 우체국직원 2명이 운송함.

〈표 14〉 전북체신청의 자금 및 과초금 운송 내용

국 명	자금	과초금		
	직도 (직영운송)	직도 (직영운송)	위탁운송(진흥회 차량) 우편등기	계
전주	181	12	246	258
동전주	75	24	313	337
군산	100	8	304	312
익산	256	16	652	668
정읍	70	27	198	225
남원	73	114		114
김제	57	118	29	147
부안	37	71	1	72
무주	18	7	56	63
임실	37	120	8	128
진안	12		113	113
순창	25	45	16	61
고창	59	67		67
장수	37	35		35
완주	20		425	425
계	1,057	664	2,361	3,025

- 주 : 1. 위탁운송은 통신사무 등기로 접수하여 진흥회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2. 직영운송은 자체 우체국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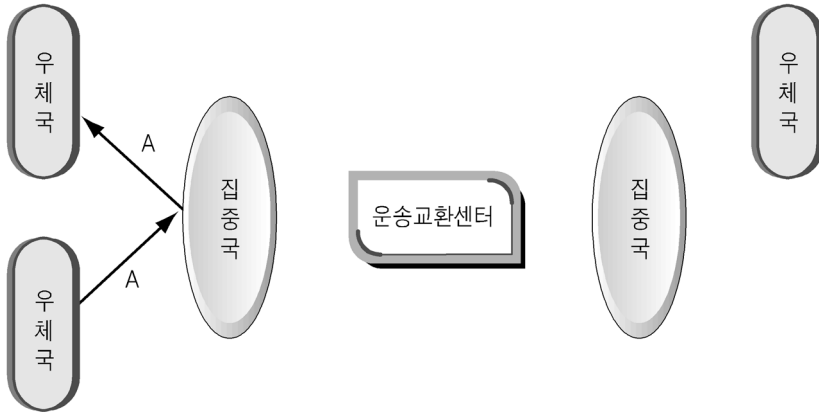
나. 운송거리

직도(직영운송)와 위탁운송(진흥회차량이용)의 경우 거리산정모형은 실제로 각 개별건수에 대한 거리를 측정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편의상 여기에서는 “소포우편서비스 원가분석 및 요금체계 정립방안(2002. 1 KISDI)”에서 개발한 운송거리 산정모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며, 집중국과 집중국간의 평균거리는 235km이고 집중국과 우체국간 평균거리는 95km이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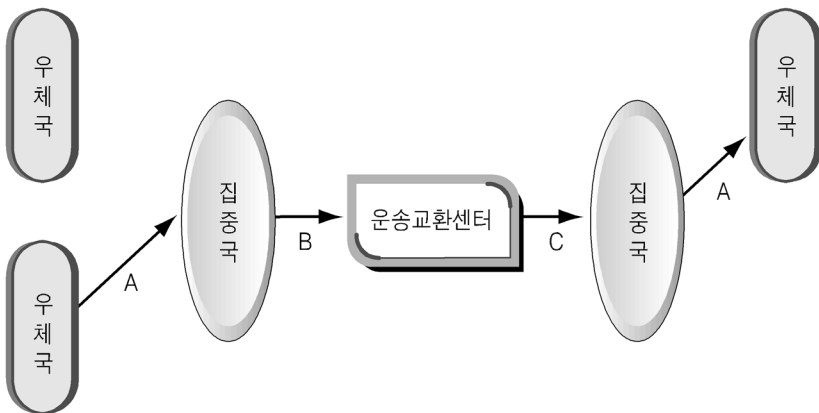
7) 이용수의 3인, “소포우편서비스 원가분석 및 요금체계 정립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1, pp119~118 참조

한편, 우정사업본부의 운송활동은 우정사업진흥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동일지역인 경우와 타지역인 경우의 운송흐름도 [그림 12]와 [그림 13]이다.

[그림 12] 동일지역내인 경우 운송흐름도



[그림 13] 타지역인 경우 운송흐름도



[그림 12]와 [그림13]을 근거로 하여 동일지역 및 타지역의 평균운송 거리의 산출내용은 <표 15>와 같다.

<표 15> 동일지역 및 타지역의 평균 운송거리 산출내용

구분	산식	평균거리
동일지역	2A	190km
타지역	2A+(B+C)	425km

위의 사례에서의 운송유형 중 직도(직영운송)의 경우에는 해당 체신청관내에서 감독국과 관내국 사이에 이루어지는 운송유형이며, 위탁운송(진흥회차량이용)의 경우에는 집중국을 거쳐 타 지역의 우체국과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운송유형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운송거리를 산정하는 경우 전북체신청의 사례에서는 직도(직영운송)의 경우에는 감독국과 관내국 사이의 거리를, 타지역의 경우에는 전체우체국의 평균거리를 적용하기로 하면 <표 16>과 같다.

<표 16> 전북체신청의 운송유형별 운송거리

구분	운송거리	비고
직도(직영운송)	69.3km	전북체신청
위탁운송	425km	전국평균

다. 용역운송수수료(사례)

부산체신청에서 한국금융(주)라는 전문운송업체에 위탁 시 적용하는 “낙찰금액기준 구간별 수수료금액”은 <표 17>과 같다.

〈표 17〉 부산체신청 산하 위탁운송관련 수수료 내용

과초국	모점국	한국은행	1회위탁운송료 (VAT별도)	연건수(249일기준)		연간용역비 (VAT별도)
				발생율(%)	예상	
양산	부산		81,000	20.8%	52건	4,195,152
금정			55,000	20.8%	52건	2,848,560
동래			55,000	20.8%	52건	2,848,560
강서			55,000	20.8%	52건	2,848,560
북부산			55,000	20.8%	52건	2,848,560
사하			55,000	20.8%	52건	2,848,560
영도			55,000	20.8%	52건	2,848,560
부산진			55,000	20.8%	52건	2,848,560
동부산			55,000	20.8%	52건	2,848,560
기장			81,000	20.8%	52건	4,195,152
해운대			55,000	20.8%	52건	2,848,560
남부산			55,000	20.8%	52건	2,848,560
		부산	한은부산	60,000	100%	249건
고성	창원		190,000	20.8%	52건	9,840,480
사천			190,000	20.8%	52건	9,840,480
진주			150,000	20.8%	52건	7,768,800
마산			55,000	20.8%	52건	2,848,560
합천			180,000	20.8%	52건	9,322,560
의령			150,000	20.8%	52건	7,768,800
함안			120,000	20.8%	52건	6,215,040
마산합포			55,000	20.8%	52건	2,848,560
		창원	한은창원	60,000	100%	249건
동울산	남울산		55,000	20.8%	52건	2,848,560
울산			55,000	20.8%	52건	2,848,560
	남울산	한은울산	60,000	100%	249건	14,940,000

〈표 17〉을 이용하여 1km당 운용수수료를 산출하여 보면 〈표 18〉과 같다.

〈표 18〉 1km당 운송수수료 산출내용

사례구간	거리	운송수수료	거리당 운송수수료
진주-창원	약56km	150,000원	2,678원/km

라. 우편차량에 의한 현금수송의 가격산정모형(전복체신청의 경우)

〈표 18〉을 이용하여 우편차량에 의한 현금수송의 가격산정을 전복체신청의 경우(2002년 9월 : 1개월분)를 대상으로 하여 산정하면 〈표 19〉와 같다.

〈표 19〉 우편차량에 의한 현금 수송가격 산출내용

(단위 : 원)

구분		운송횟수	운송거리	운송수수료	운송비
자금	직도 (직영운송)	1,057	69.3km	2,678원/km	196,163,768
과초금	직도 (직영운송)	664	69.3km	2,678원/km	123,228,706
	위탁운송	2,361	425km	2,678원/km	2,687,172,150
계					3,006,564,624

한편, 위탁운송의 경우 현재는 등기소포의 가격으로 운송비가 책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특수 관계가 없는 제3자와의 거래를 상정하는 경우 운송거리, 업무의 위험성(난이도) 등을 고려했을 때 보다 높은 수준의 운송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기의 사례는 단순히 전복체신청의 2002년 9월(1개월)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전체적인 규모의 파악에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전국적인 실태조사 및 원가분석을 통해 추가적인 작업이 요구되어야만 한다.

이와 관련 운송거리는 실제 빈도에 따른 거리가 아닌 평균거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실제적인 운송거리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운송수수료의 경우도 현재 특정업체와 체신청간의 계약수수료를 단위당(km)가격으로 환산하여 적용하였으나 화물운송과 관련된 타업체 등의 운임수준이 고려되는 경우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도 있다.

마. 가격산정법: 표준가격법 또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가격산정 방법은 “표준가격법” 또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현금 수송운송비의 가격산정 모형은 다음과 같다.

$$\text{운송비} = \text{운송횟수} \times \text{운송거리} \times \text{단위당 운송수수료}$$

4. 일반회계전입금 및 보특회계전입금

가. 일반회계전입금

1) 내용

다음의 산출내역은 현재 우정사업본부에서 산출하는 방식이며 “2002예산 사업별 설명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경비 정산방법

○ 2002년도 특수우편 수탁비용은 우선 2001. 3. 31현재 특수우편 수탁지원 요원을 기준으로 인건비, 경비, 물자비 및 기타 수탁비용을 산출하여 추정예산 편성

○ 2002년도 수탁집행비용 결산결과 예산편성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2002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예산 편성시 이를 증감계상 조치

경비 산출내역

○ 인건비 : 2,818백만원

- 2001. 3. 31현재 수탁집행요원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 2001예산서에 의거 보수총액 산정(봉급 등 11항목 직급별 보수단가 적용)
- 수탁업무 수행비율을 반영하여 수탁집행업무에 공여된 인건비 산출

○ 물자비 및 경비 : 658백만원 (물자비 : 178백만원, 경비 : 480백만원)

- 통특(즉, 통신사업특별회계) 원가계산결과 인건비 대비 물자비, 경비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비율을 산출하여 물자비 및 경비 적용비율을 산정
- ※ 2001년 원가계산시 적용비율 : 물자비 6.35%, 경비 : 17.0%

○ 기타경비 : 461백만원

- 개인활동비, 우편보안활동비 등 특수우편 수탁집행 부대비용

○ 전년도 정산분 : 138백만원

○ 총경비 : 4,075백만원

- 2,818백만원(인건비) + 658백만원(물자비 등) + 461백만원(기타) + 138백만원(정산분) = 4,075백만원

2) 가격산정법 : 원가가산법

정보통신부 소관 일반회계는 정보화촉진 및 정보통신기반 조성지원, 초고속통

신망 구축지원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세출예산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세입 예산이 있는 경우에 추정해 볼 수 있는 이윤율의 추정이 불가능하며 기업회계를 적용하지 않는 특성상 이윤율의 의미는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상기의 4,075백만원을 적정한 내부거래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통신사업특별회계의 전체 이윤율을 대체적인 방법으로 검토할 수 는 있을 것이다.

나. 보특회계전입금(즉, 우체국보험특별회계전입금)

1) 내용

다음의 산출내역은 현재 우정사업본부에서 산출하는 방식이며 “2002예산 사업별 설명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산정기준

- 노무비, 물자비, 경비 : 2000년도 통신사업특별회계 분야별 결산원가에 통신사업특별회계원가 상승률과 우체국보험사업특별회계원가비율 적용
- 시설사용료 : 2000년도 비상각자산(토지, 건설가계정) 결산원가에 사용료율, 점유율, 규모차이 적용

산정방식

- 노무비 : (보특노무비 2000년 결산원가) × (2001년 인건비 상승률 6.7% × 6.7%) × (2000년/1999년 보특노무비 원가비율 96% × 96%)
- 물자비, 경비 : (보특물자비 2000년 결산원가) × (1996~2000까지 통특원가 연평균 증가율 9% × 9%) × (2000/1999년 보특원가 비율 99% × 99%)
- 시설사용료 : (2000년 결산원가) × (사용요율 2.5%) × (보험점유율) × (1995~2000년까지 자산평가액 차이에 대한 연평균규모차이 × 규모차이)

전출금 산출내역

- 노무비, 물자비 및 경비의 분담액 : 124,371백만원

우체국보험사업관련 노무비, 물자비 및 경비의 분담액 산출내용은 <표 20>과 같다.

<표 20> 우체국보험사업 관련 노무비, 물자비 및 경비의 부담액 산출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노무비	물자비	경 비	계
결산원가(A)	61,123,947	10,325,038	41,405,434	112,854,419
적용률B)	1.067X1.067	1.09X1.09	1.09X1.09	
	0.96X0.96	0.99X0.99	0.99X0.99	
부담액(AXB)	64,133,169	12,023,060	48,214,840	124,371,069

○ 시설사용료 : 9,565백만원

우체국보험사업관련 시설사용료 산출내용은 <표 21>과 같다.

<표 21> 우체국보험사업 시설사용료 부담액 산출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결산원가(A) (평가액)	사용요율 (B)	보험점유율 (C)	규모차이 (D)	부담액 (AXBXCXD)
토 지	2,174,160,531	0.025	0.15861 (면적)	1.0308X1.0308	9,160,327
건설가계정	212,416,163	0.025	0.06340 (인원수)	1.0966X1.0966	404,868
계	2,386,576,694				9,565,195

○ 전출금 : 133,936백만원

-124,371백만원(노무비 등 부담액) + 9,565백만원(시설사용료) = 133,936백만원

2) 가격산정법 : 원가가산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존재하나 기타특별회계여서 기업회계에 의한 결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특성상 이윤율의 의미는 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상기의 133,936백만원을 적정한 내부거래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통신사업특별회계의 전체 이윤율을 대체적인 방법으로 검토할 수는 있을 것이다.

참고적으로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근거로 하여 이윤율을 추정해 보면 <표 22>와 같다.

〈표 22〉 2000회계년도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서 통한 이익률 산출내용
(단위 : 백만원)

세입(징수결정액) (A)	세출(지출액) (B)	이윤율 (A-B)/A
359,596	356,020	1%

주 : 지출액과 비용을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음

5. 물품업무 중 우편연하장 등 판매

가. 우편연하장 비용배분

2001년도 우편연하장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 우편연하장 배정내역

2001년도 체신청별 우편연하장 배정내역은 〈표 23〉과 같다.

〈표 23〉 2001년도 체신청별 우편연하장 배정내역

(단위 : 1,000장)

청 별	서울청	부산청	충청청	진남청	경북청	전북청	강원청	제주청	우정국	합계
배정물량	3,638.8	2,154.7	1,870.9	1,582.8	1,723.0	704.1	721.0	163.7	7.0	12,566.0

자료 : 우정사업본부 내부자료

○ 우편연하장의 비용배분 산식

연하장의 제작원가는 현재 모두 본부에서 비용으로 계리되고 있으나 판매수입이 모두 우체국에서 계리되는 점을 감안하여 제작원가가 각 우체국으로 적절히 배부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용배분을 위한 산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text{연하장 비용배분액} = \text{우체국별 연하장 배정물량} \times \text{단위당 제작원가}$$

○ 우편연하장 비용배분액 산정에 있어 고려할 점

우편연하장 비용배분액 산정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각 체신청별 배정물량과 함께 해당 체신청에서 산하 우체국으로의 연하장

배정량을 파악하여야 한다. 즉, 원가계산(예: 견적원가)을 통해 연하장의 개별 단위당 제작원가를 산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제작에 따른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와 부대비용(예: 일반관리비, 이윤)과 함께 물량증가에 따른 할인율을 고려하여 단위당 제작단가를 추정하고 있다.

둘째, 본부, 청 및 우체국간 거래의 비용배분과 함께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우정사업본부와 각 체신청 및 우체국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비용배분 등 행위의 내역을 회계처리를 통해 기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각 조직간의 내역을 분지점계정을 통해 회계처리하고 그 기록을 관리함으로써 수시로 필요한 시점에 조직간 내부거래의 내역과 금액을 파악하여 우체국 또는 체신청 단위의 경영성과평가 및 분석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본부에서 청을 거쳐 최종적으로 우체국에 비용을 배분하는 경우는 다음과 회계처리 한다.

- 본부와 체신청간의 거래
 - (본부) (차변) 체신청-○○체신청 xxx (대변) 비용 xxx
 - (체신청) (차변) 비용 xxx (대변) 본부 xxx
- 체신청과 우체국간의 거래
 - (체신청) (차변) 우체국-○○우체국 xxx (대변) 비용 xxx
 - (우체국) (차변) 비용 xxx (대변) ○○체신청 xxx

나. 나만의 우표의 비용배분

나만의 우표의 경우 제작원가는 현재 모두 본부에서 비용으로 계리되고 있으나 판매수입이 모두 우체국에서 계리되는 점을 감안하여 제작원가가 각 우체국으로 적절히 배부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용배분을 위한 산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text{나만의 우표 비용배분액} = \text{우체국별 판매물량} \times \text{단위당 제작원가}$$

다. 가격산정법 : 표준가격법 또는 협상가격법

우편연하장 비용배분 및 나만의 우표의 비용배분의 경우 가격산정 방법은 “표준가격법” 또는 “협상가격법”을 활용할 수 있다.

6. 본부와 체신청간의 대차거래

가. 내용

실제로 예금의 수신업무는 우체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자금수신에 따른 운영수익을 우체국에서 전혀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현재 내역상으로 보면 1차적으로 우체국과 본부간에 자금이전(우체국=>본부)에 따른 내부거래가 존재하고, 2차적으로 체신청과 본부간에 자금이전(본부=>체신청)에 따른 내부거래가 존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자금의 수신은 개별 우체국에서 이루어지나 자금운용은 본부(또는 청)에서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각 우체국별 적절한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자금운영수익을 수신액비율로 배부할 필요가 있다. 자금운용수익을 개별우체국으로 배부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다.

$$\text{개별 우체국 자금운영수익 배분액} = (\text{본부자금운영수익} + \text{가 체신청 자금운영수익}) \times \text{개별 우체국자금수신액} / \text{전체 자금수신액}$$

나. 가격산정법 : 협상가격

본부와 체신청간의 대차거래는 대표적인 우정사업본부의 조직간 내부거래의 사례이다. 조직간 내부거래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장·단점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그러나 협상에 의한 경우에도 합리적인 협상을 위한 지침(guide line)을 마련하여 조직담당자가 이를 이해하고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7. 무료입주 우체국

가. 내용

무료입주 우체국 위치하는 곳은 각 체신청별로 상이하므로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으며, 그 유형에 있어서는 대학교, 법원, 시청 또는 도청, 민간기업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례로서 부산체신청의 경우 무료입주 우체국의 현황은 <표 24>와 같다.

<표 24> 부산체신청 산하 유형별 무료입주 우체국 현황

대학교	법원	자치단체/중앙관서	민간기업	연구소	기타	계
21	4	2	7	0	0	34개소

자료 : 부산체신청 내부자료

나. 가격산정법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무료입주 우체국의 임차료 산정방법으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임차료 산정과 관련하여 무료입주 우체국 위치하는 곳 중 정부기관(예: 중앙정부기관, 자치단체, 국·공립대학교, 법원 등)이 아닌 민간기업, 사립대학교 등의 경우에는 정부간 내부거래라고는 볼 수 없으나, 향후 유상임대로 전환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

임차료 산정과 관련하여 무료입주 우체국의 임차료는 건물의 위치, 주위환경, 기타 입지조건에 따라 각각 상이한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단위당 임차료(예: m²당 또는 평당)를 제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거래실례가격 등을 참고로 하여 단위당 임차료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며, 임차료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text{무료입주 우체국 임차료} = \text{임차면적} \times \text{단위당 임차료(m}^2 \text{ 또는 평당)}$$

8. 시사점

우정사업에 있어 사업간 상호 거래에 따른 가격을 설정하기 위해 전제조건으로 각 사업별 즉 우편사업, 예금사업 및 보험사업의 회계분리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사례중심으로 우정사업에 있어 사업 상호간 거래에 따른 가격설정을 위한 가격산정법으로 제시된 방법은 절대적인 가격산정 방법이라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중 실제적용 가능성, 관련정보의 정보시스템(예: ERP)에 의한 산출 가능성, 이해관계자의 설득 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각 목적에 적합한 방법이 새롭게 선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김성기, 『현대관리회계』, 1998
- 김연재, 『우리나라 고급회계』, 상경사, 2000. 4
- 남찬기 외, 『우정사업 수지분석 및 원가계산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8. 12
- 남찬기 외,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우정사업 발전전략』,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9. 12
- 대주회계법인, 『우체국금융수수료 체계조정에 대한 연구보고서』, 2000.10
- 삼일회계법인, 『회계분리 및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보고서』, 2001. 5. 8
- 서울체신청 회계과, 『회계업무편람』, 1997.6
- 송기인 외, 『WTO체제하의 우편시장 개방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8. 12
- 신한회계법인, 『우체국 창구망 공동이용업무 분석』, 2001.9
- 안진회계법인, 『체신금융사업 단위사업별, 상품별 수지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96
- 우정사업본부·LG CNS, 『우정사업 통합경영관리시스템(ERP) 기업회계시스템 (교육교재)』, 2002. 8

- 우정사업본부, 「2001회계연도 사업별 수지분석」, 2002. 3
- 우정사업본부, “2002예산 사업별 설명자료”
- 이용수의 3인, “소포우편서비스 원가분석 및 요금체제 정립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1,
- 이태희, 「우리나라 통신업 회계분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 국민대북약경영연구 3, 1997. 12
- 전산관리소·LG-EDS시스템, 『우편물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BPR/ISP 최종보고서(I)』, 2001. 5. 30
- 정보통신부, 『결산보고서』, 2001. 12
- 정보통신부,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 2001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백서”, 2002. 11
- 정혜영, 『경쟁체제정착을 위한 회계분리제도』, 산업연구원, 1998
- 충남대학교 경영연구소, 『통신사업 특별회계 원가계산방식 및 원가배분에 관한 연구』, 1997

2. 국외문헌

- Brown P., H. Y. Izan and A. L. Loh, Fixed Asset Revaluation and managerial Incentives, ABCUS vol.28, 1992
- Charles T. Horngreen, George Foster and Srikant M. Datar, Cost Accounting: a managerial emphasis, 8th ed., Prentice-Hall, 1994
- J. Brimson and J. Antos, Activity-Based Management, John Wiley & Sons, 1994
- PriceWaterhouseCoopers, “ The ABC of postal mail processing ”, Postal Technology International 99
- Sharpe I. G. and R. G. Walker, “ Asset Revaluation and Market price ”,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Autumn), 1975

정보통신정책ISSUE지 과월호 색인

(1995년 ~ 2001년)

년 도	권 호	내 용
1995년	제7권 1호 통권 62호	조 신·고영진 : 국제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전화요금구조 분석
	제7권 2호 통권 63호	최조운 :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과 종합유선방송(CATV)
	제7권 3호 통권 64호	이재준 : 무선호출시장의 국내의 동향 및 전망
	제7권 4호 통권 65호	김상택 : 접속료의 경제학적 접근
	제7권 5호 통권 66호	박천일·김희정 : 위성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아시아·태평양 지역국가들의 위성방송 정책 및 법제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제7권 6호 통권 67호	김희수 : 정보통신산업 현황 및 문제점정보통신업체 설문조사 결과 분석
	제7권 7호 통권 68호	홍성걸 : 우리나라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의 현황과 문제점
	제7권 8호 통권 69호	고병철 : 정보통신산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동향 및 전망
	제7권 9호 통권 70호	김환선 : 시내망 경쟁 현황 및 현안고찰
1996년	제8권 1호 통권 71호	조 신·한은영 : 미국의 통신법 개정과 통신시장의 구조 변화
	제8권 2호 통권 72호	김진기 : 세계 이동전화시장의 현황에 대한 고찰
	제8권 3호 통권 73호	최정일 : 글로벌개인휴대통신(GMPCS)의 사업현황 및 추진 과제
	제8권 4호 통권 74호	윤준수 : 한국 인터넷 네트워크의 발전방안
	제8권 5호 통권 75호	임승만 : 국제전화 정산 및 서비스 시장질서 변화 (미국의 국제전화 협정요금관련 정책 분석)
	제8권 6호 통권 76호	손동원 : 세계주요통신사업자의 전략방향과 조직구조
	제8권 7호 통권 77호	성낙일·정인호 : 한국통신의 통신요금지수 개발 및 추세분석
	제8권 8호 통권 78호	김상택·이재준 : 상호접속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향
	제8권 9호 통권 79호	이명호·한소윤 : APEC의 정보통신 현황: EU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1997년	제9권 1호 통권 80호	김병근 : 주요 선진국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 변화와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
	제9권 2호 통권 81호	김용규·피우익 : 공전접속을 통한 음성재판매

년 도	권 호	내 용
1997년	제9권 3호 통권 82호	김태은 : 캐나다 통신산업의 구조와 현황 - 한·캐나다 통신조달시장개방협상에 대응하여 -
	제9권 4호 통권 83호	김상택 : 이부요금과 접속료
	제9권 5호 통권 84호	조국현 : 정보통신산업정책과 국가연구개발프로젝트 - TDX R&D Project 성과의 영향요인분석을 중심으로 -
	제9권 6호 통권 85호	정찬모 : 한·EU 통신협상 경과 및 평가
	제9권 7호 통권 86호	윤준수 : 미국의 고도정보통신정책(HPCC) 및 차세대인터넷 (Next Generation Internet) 계획 분석
	제9권 8호 통권 87호	김대호·김유정 : 디지털 지상파방송의 전망과 정책적 과제
	제9권 9호 통권 88호	임승만 : 국제전화서비스시장 개방에 따른 서비스경쟁력 벤치마크 - 국제전화요금체계의 합리화와 최적선택통화서비스를 중심으로 -
	제9권 10호 통권 89호	홍동표·박성진 :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정보통신산업 분석
	제9권 11호 통권 90호	이인찬 : 정보통신 중소기업의 창업행태와 창업활성화정책
	제9권 12호 통권 91호	강병민 : 전기통신산업의 회계제도 : 개념적 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9권 13호 통권 92호	김용규·정시연 : 정보통신서비스의 품질보증과 보상제도
	제9권 14호 통권 93호	조 신·박진현 : 정보통신산업 수출지원 제도 : 현황 및 정책방향
제9권 15호 통권 94호	김희수·유선실·최영석·이상오 : 게임기 산업의 동향과 국내 게임전용기 개발의 타당성	
1998년	제10권 1호 통권 95호	김윤배·이희상·노승중 : 국내의 자가전기통신설비의 현황과 정책과제
	제10권 2호 통권 96호	권남훈 : 정보통신분야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제10권 3호 통권 97호	주기인·박혜영 : 인터넷: 통신사업에 미치는 영향
	제10권 4호 통권 98호	최용제 : 미국 주파수경매의 사례분석
	제10권 5호 통권 99호	손상영·윤지용 : 인터넷 의료정보서비스 확산에 대비한 보건 의료정책의 개선방안
	제10권 6호 통권 100호	정찬모·장석준 : 인터넷 도메인명의 효율적 관리와 분쟁해결 방안
	제10권 7호 통권 101호	김춘아 : 국내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현황 및 정책방향
	제10권 8호 통권 102호	이상덕·김사혁 : 일본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PHS 실패 원인

년 도	권 호	내 용
1998년	제10권 9호 통권 103호	이철승·이한희 : 전자상거래 시대의 물류 정보화 대응 방안 분석
	제10권 10호 통권 104호	이내찬 : 별정·기간통신사업자의 향후 구도 - 게임은 Win-Win인가 Zero-Sum인가? -
	제10권 11호 통권 105호	김진기 : 재판매시장의 환경변화와 사업전략 분석
	제10권 12호 통권 106호	홍동표·정시연 : 산업연관 분석을 이용한 정보통신산업의 국민경제적 기여도 분석 (1985~1995)
	제10권 13호 통권 107호	황철증 : 종합정보통신망·초고속정보통신망·인터넷·가상공간, 새로운 법률적 이슈와 규율
	제10권 14호 통권 108호	김봉식·구자춘 : 이동전화시장의 대리점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일고 - 일본 사례와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
1999년	제11권 1호 통권 109호	김상택 : 비선형 접속료와 요금 산정 모형
	제11권 2호 통권 110호	김병준 : 지식정보화시대 고용정책에 대한 새로운 도전
	제11권 3호 통권 111호	황철증 : 인터넷 가브넌스의 이해 (Introduction to the Internet Governance) - IANA와 ICANN의 역사적 분석을 통하여 -
	제11권 4호 통권 112호	정찬모 : 디지털 이슈에 대응한 저작권법 개정방향 -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과 그 시사점 분석을 중심으로 -
	제11권 5호 통권 113호	홍동표·이상오·유선실 : 디지털경제에서의 기업전략 - 정보가전(Information Appliance)을 중심으로 -
	제11권 6호 통권 114호	이내찬·유기주 : 미국의 통신시장 개방화 전략과 일본의 대응 - 미일 접속료 논쟁과 미국의 국제정산정책 분석 -
	제11권 7호 통권 115호	김상택·공영일 : 남북한 정보통신부문의 교류협력과 통합에 관한 연구
	제11권 8호 통권 116호	최용제·김재수 : 미국 주파수재산권 형성과정에 대한 사례 분석
2000년	제12권 1호 통권 117호	권남훈 : 유럽의 실리콘밸리 : 아일랜드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공요인
	제12권 2호 통권 118호	배찬권·현 명·김주영·박세웅·심형민·윤충한·최계영·홍동표 : 디지털 경제에서의 유통구조의 변화

년 도	권 호	내 용
2000년	제12권 3호 통권 119호	박동욱·이홍재 : 주요 외국의 IMT-2000 허가정책 비교연구
	제12권 4호 통권 120호	강임호·김용현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주식시장의 변화 -IMF 이후 주식시장의 변화와 온라인 주식거래-
	제12권 5호 통권 121호	강홍렬 : Ethernet 기술혁신과 정책 시사점
	제12권 6호 통권 122호	한은영 : 인터랙티브 TV(Interactive TV) 서비스의 전개 현황 및 주요 쟁점
	제12권 7호 통권 123호	초성운·한은영 : 인터넷 방송 이용행태에 대한 조사연구
	제12권 8호 통권 124호	윤석진·강임호 : 기업 조직간 정보시스템의 이용과 효과
2001년	제13권 1호 통권 125호	송지희 : 온라인 쇼핑몰 업체분석 -수익, 고객충성도, 가격, 물류를 중심으로-
	제13권 2호 통권 126호	유지연·황주성 : 인터넷혁명은 지역해체를 가속화시킬 것인가? -지역사회에 기반한 인터넷비즈니스를 중심으로-
	제13권 3호 통권 127호	김경섭 : 정부 정보화책임관(CIO)들이 인지하는 전자정부의 주요 이슈
	제13권 4호 통권 128호	강임호·주 원 : 신경제에 관한 논의 및 시사점
	제13권 5호 통권 129호	오정숙 : 소비자 대상 국내 인터넷 경매 업체 분석 -도메인 분석을 중심으로-
	제13권 6호 통권 130호	정부연·신일순 : XML을 통한 B2B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및 시사점